

발 간 등 록 번 호
53-6270000-00054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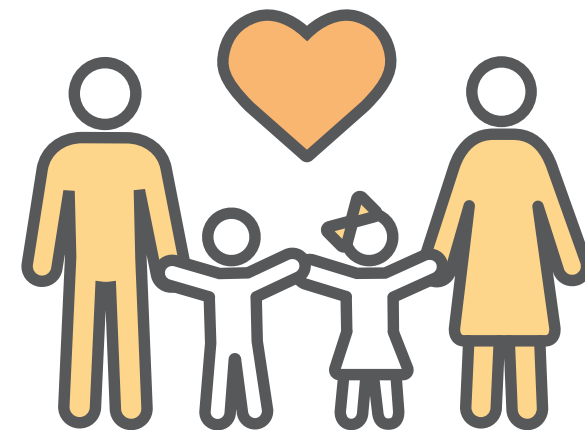


2026 장애인 복지서비스

한 권으로 알아보기

2026 장애인 복지서비스

한 권으로 알아보기



목 차

Contents

1	장애인등록 관련 업무	02
2	연금 및 수당	07
3	보육·교육 지원	08
4	의료 및 재활 지원	12
5	발달장애인 지원	18
6	서비스	21
7	일자리 지원	29
8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35
9	공공요금 등 할인·감면	37
10	세제혜택	42
11	지역사회 복지사업(재활시설) 및 기타	44
12	장애인 권익옹호	47
13	중증장애인생산물품 우선구매제도 안내	48
	〈구·군 및 유관기관 연락처〉	50

목차

Contents

1	장애인등록 관련 업무	02
2	연금 및 수당	07
3	보육·교육 지원	08
4	의료 및 재활 지원	11
5	발달장애인 지원	17
6	서비스	20
7	일자리 지원	28
8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34
9	공공요금 등 할인·감면	36
10	세제혜택	41
11	지역사회 복지사업(재활시설) 및 기타	43
12	장애인 권익옹호	46
13	중증장애인생산물품 우선구매제도 안내	47
	〈구·군 및 유관기관 연락처〉	49

1. 장애인등록 관련 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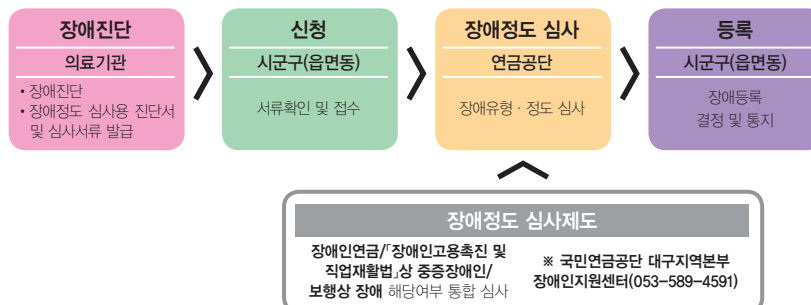
■ 장애인등록 / 구·군(읍·면·동)

- **등록신청** : 본인, 법정대리인(19세 미만 미성년자), **보호자** 대리신청 가능
 - ※ 보호자 :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장애인과 주소가 같은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 ※ 거동이 불가능한 독거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공무원이 장애인등록 직권 신청 가능

● 등록대상 (15개 장애유형)

대분류(2종)	중분류(4종)	소분류(15종)	세분류
신체적 장애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척추장애, 변형 등의 장애
		뇌병변장애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겹보임(복시)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내부 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 중이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 기능 이상
		장루·요루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뇌전증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뇌전증
정신적 장애	발달장애	지적장애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자폐성장애	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정신장애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재발성우울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강박장애, 투렛장애(Tourette's disorder), 기면증

● 등록절차



- **제출서류** : 장애진단서, 검사자료, 진료기록지(주요 진료기록) 등

1. 장애인등록 관련 업무



■ 장애정도심사 / 국민연금공단

- **심사대상** : 모든 등록 장애인(2011.4.1.부터)
 - ※ 재진단사유(재판정, 조정, 이의신청) 없는 장애인은 기존 등록상태 유지
- **심사사유**
 - 장애인등록을 신청하거나 장애정도 조정 또는 재판정을 신청하는 경우
 - 등록장애인이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중증장애아동수당 등 개별사업에서 장애정도심사를 받도록 규정한 경우
- **중복장애 합산판정**
 - 2종류 이상의 장애가 중복되어 있는 장애의 경우 주된 장애와 차상위 장애를 합산하여 판정, 그 외의 장애가 있는 경우는 유효장애로 인정하되 장애정도 합산판정은 하지 않음
- **장애진단시기(최초)**

장애유형	장애진단 시기
지체장애	■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진단,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부상 등의 발생 또는 수술 후 6개월 또는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 ※ 절단, 척추고정술 등 장애상태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 예외 ※ 왜소증 : 남성 만 18세, 여성 만 16세부터, 연골무형성증 : 만 2세 이상 ※ CRPS : 2년 이상 지속적이고 충분한 치료에도 객관적인 검사 결과 이영양성 변화 등으로 인한 근위축 또는 관절구축 등이 뚜렷한 경우
뇌병변장애	■ 뇌성마비, 뇌졸중, 뇌손상 등과 기타 뇌병변이 있는 경우는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파킨슨 질환은 1년 이상) ※ 소아청소년은 만 1세 이상의 연령부터 진단 가능
시각장애	■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진단,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부상 등의 발생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 ※ 안구적출 등 장애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 예외
청각장애	■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진단,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부상 등의 발생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 ※ 청력기관의 결손 등 장애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 예외 ※ 평형기능장애: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
언어장애	■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진단,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부상 등의 발생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 ※ 소아청소년은 만 3세 이상의 연령부터 진단 가능 ※ 후두 전적출술 등 장애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 예외
지적장애	■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진단,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부상 등의 발생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 ※ 선천적 지적장애(만 2세 이상) 등 장애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 예외
정신장애	■ 각 질환에 대하여 1년 또는 2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 1년 :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재발성우울장애 ※ 2년 :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강박장애, 뚜렛장애, 기면증
자폐성장애	■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가 확실해진 시점(만 2세 이상)

1 장애인등록 관련 정보

2 장애인연금

3 장애인복지

4 의료지원

5 발달장애인

6 서비스

7 일자리지원

2026년 장애인복지서비스 한권으로 알아보기

장애유형	장애진단 시기
신장장애	■ 만성신부전으로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또는 복막) 투석 치료 후
심장장애	■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호흡기 장애	■ 현재의 상태와 관련한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 경과하고, 최근 2개월 이상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는 만성 호흡기 질환의 경우
간장애	■ 대상자의 질병 상태 등에 대한 소관 전문의의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 경과하고, 최근 2개월 이상 적극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는 만성간질환의 경우
안면장애	■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진단,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부상 등의 발생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
장루 · 요루장애	■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복회음절제술 후 에스결장루, 전대장직장절제술 후 시행한 말단형 회장루 등) · 요루(요관피부루, 회장도관 등)의 경우에는 장루(요루)조성술 이후 ※ 그 외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 조성술 후 1년이 지난 시점
뇌전증 장애	■ 성인(만 18세 이상) : 최초 진단 이후 2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 ■ 소아청소년(만 18세 미만) : 최초 진단 이후 2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 후 ※ 영아연축,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등 뇌전증성 뇌병증은 1년 이상 지속적 치료 후 진단 가능
✓ 수술 또는 의료적 조치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처치 후로 장애진단 유보 ✓ (신장, 심장, 폐, 간) 이식 후 장애진단 가능	

● 장애유형별 재판정 시기

장애유형	장애유형별 재판정 시기
지체(상·하지) 기능장애	■ 척수병변(질환) 만6세 미만 장애판정 받은 경우 : 만6세 이상~12세 미만에서 재판정
지체(변형)장애	■ 왜소증(만18세~20세 미만 진단 남성, 만16세~18세 미만 진단 여성) : 2년 후 재판정 ■ 연골무형성증으로 판정받은 경우 : 2년 후 재판정
뇌병변장애	■ 만6세 미만 장애판정 받은 경우 : 만6세이상~12세 미만에서 재판정
시각장애	■ 각막이식술 후 1년 후 재판정 ■ 각막이식을 받지 못한 경우 : 최초 판정일로부터 3년 이상 기간을 정하여 재판정 ■ 백내장수술 후 6개월 후 재판정 〈백내장수술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매 2년마다 재판정〉
평형장애	■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
지적 · 자폐성장애	■ 만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 받은 경우 : 만6세이상~12세 미만에서 재판정
정신장애	■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
신장장애	■ 매 4년마다 재판정(혈액투석, 복막투석의 경우), 이식의 경우 재판정 제외
호흡기 · 간장애	■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 ■ 이식의 경우 재판정 제외
장루 · 요루장애	■ 복원수술 가능한 장루 · 요루 : 최초 판정일로부터 3년 이후의 일정시기를 정하여 재판정 ■ 복원수술 불가능한 장루 · 요루 : 의무적인 재판정에서 제외

1. 장애인등록 관련 업무



장애유형	장애유형별 재판정 시기
뇌전증장애	■ 최초 판정일로부터 3년 이후의 일정시기를 정하여 재판정
심장장애	■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시기를 정하여 재판정 ■ 이식의 경우 재판정 제외
언어장애	■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지원

-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장애인등록 신청자,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등록장애인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 하나의 자격만 취득하고 있어도 지원 가능
 - 기존 등록장애인이 신규로 새로운 장애를 추가하는 경우 신규 등록으로 지원 가능
 - 재판정은 의무적·서비스 재판정 중 하나의 경우라도 해당될 경우 지원
 - 단, 직권재판정의 경우 저소득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지원
 - 장애정도 조정 신청, 이의신청의 경우는 진단서 발급비 지원 불가
- **내용** : 기준비용(영수액이 더 적은 경우 영수액으로 지원) 내에서 지원하고 추가비용은 신청인이 부담
 - 기준비용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는 4만원, 그 외의 장애는 1만 5천원
 - * 신규장애인등록신청자(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없이 정액 지급

■ 장애정도 심사 검사비 지원

- **지원액** : 총 1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검사비 총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만원 지급, 10만원 이내인 경우 검사비 총액 지급(장애정도 조정 신청, 이의신청의 경우는 지원 불가)

구분	지원대상(기준)
신규 장애인등록 신청자	· 기초생활수급자
의무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서비스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중증장애아동수당)	
직권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 담당자의 직권에 의거 장애상태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소득기준 무관

1 장애인등록 관련 업무

2 정기검진

3 지원·인정

4 의료지원

5 발달장애

6 서비스

7 일자리지원

2026년 장애인복지서비스 한권으로 알아보기

■ 장애인등록증 발급 및 관리

-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의 4종류 중 1종만 발급

카드 종류		비고
신분증형 (금융기능 없음)	일반 신분증형	금융기능(신용/체크) 유무에 따라 '신분증형', '금융카드형' 두 가지로 구분하고 그 각각은 다시 하이패스 기능(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유무에 따라 '일반~', '통합~'으로 구분함
	통합 신분증형(하이패스 기능)	
금융카드형 (금융기능 있음)	일반 금융카드형	
	통합 금융카드형(하이패스 기능)	

※ 양도 및 대여 불가, 장애인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사망하면 등록증 반환

● 기관별 역할

- 보건복지부 : 장애인등록증 등 발급 관련 총괄조정 및 관련법규 정비
- 신한카드사 : 신용 · 직불 기능 추가 관련 심사, 등록증 등 제작비용 부담, 장애인복지기금 출연, 카드 입회비 · 연회비 면제
- 한국조폐공사 : 장애인등록증 제작
- ※ 장애인등록증 개선사업을 위한 협약 체결('01.2.2)

● 장애인등록증 등 개별 등기배송서비스 지원

- 대상 : 장애인복지카드 신규 및 재발급신청 장애인
- 내용 : 장애인복지카드 개별 등기비용(건당 3,820원) 시비 지원

■ 외국인 및 재외동포 장애인등록

- 등록대상 : 재외국민(국적자), 외국국적동포(F-4), 한국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 특별기여자(F-2)
- ※ 등록된 외국 장애인의 경우 6개월마다 적정 자격유지 여부 확인

■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등록

● 등록대상

- 국가유공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4 · 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 공로상이자, 6 · 18자유상이자
- 보훈대상자(보훈보상·지원대상자) :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 등록절차 : 기존 장애인과 동일하게 장애인등록 신청 및 장애등급심사 실시, 상이등급자의 경우 신체검사표 활용 등 심사 간소화

● 지원제외 : 관련법령에 따라 제공되는 보훈서비스와 중복되는 장애인서비스

※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수당, 자녀교육비, 의료비, 자금대여, 보조기구 교부 등

2. 연금 및 수당



2. 연금 및 수당

사업명	신청자격(지원대상)	지 원 내 용	비 고																																
2-1. 장애인연금 지원 (중전1~2급 및 3급 중복장애)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 : 중전 1~2급, 3급 중복장애* * 3급 중복장애 : 장애 3급 외의 또 다른 장애를 하나 이상 가진 사람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2026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 140만원 부부가구 : 224만원	■ 연금 = 기초급여 + 부가급여 (매월, 단위:원) <table><tr><th colspan="2">구 분</th><th>기초급여</th><th>부가급여 (특례)</th></tr><tr><td rowspan="2">기초(재가)</td><td>18~64세</td><td>349,700</td><td>90,000</td></tr><tr><td>65세이상</td><td>0</td><td>439,700</td></tr><tr><td rowspan="2">시설(특례)</td><td>18~64세</td><td>349,700</td><td>0</td></tr><tr><td>65세이상</td><td>0</td><td>0(80,000)</td></tr><tr><td rowspan="2">차상위(특례)</td><td>18~64세</td><td>349,700</td><td>80,000</td></tr><tr><td>65세이상</td><td>0</td><td>80,000 (150,000)</td></tr><tr><td rowspan="2">차상위초과</td><td>18~64세</td><td>349,700</td><td>30,000</td></tr><tr><td>65세이상</td><td>0</td><td>50,000</td></tr></table> ※ 기초급여 1인 수급자 기준임.	구 분		기초급여	부가급여 (특례)	기초(재가)	18~64세	349,700	90,000	65세이상	0	439,700	시설(특례)	18~64세	349,700	0	65세이상	0	0(80,000)	차상위(특례)	18~64세	349,700	80,000	65세이상	0	80,000 (150,000)	차상위초과	18~64세	349,700	30,000	65세이상	0	50,000	읍·면·동 신청
구 분		기초급여	부가급여 (특례)																																
기초(재가)	18~64세	349,700	90,000																																
	65세이상	0	439,700																																
시설(특례)	18~64세	349,700	0																																
	65세이상	0	0(80,000)																																
차상위(특례)	18~64세	349,700	80,000																																
	65세이상	0	80,000 (150,000)																																
차상위초과	18~64세	349,700	30,000																																
	65세이상	0	50,000																																
2-2. 경증장애인 장애수당 지원 (중전 3~6급)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중 18세 이상의 중전 3~6급 등록 장애인 * 중전 3급 중복장애인 제외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1인당 월 6만원 ■ 보장시설수급자 : 1인당 월 3만원	읍·면·동 신청																																
2-3. 장애아동 수당 지원 (중전 1~6급)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중 18세 미만의 장애아동 * 중증장애인 : 중전 1~2급, 3급 중복장애 * 경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중전 3~6급인 자	■ 지원내용 (매월, 단위:원) <table><tr><th>구분</th><th>중증장애 아동수당</th><th>경증장애 아동수당</th></tr><tr><td>생계·의료 급여 (재가)</td><td>220,000</td><td>110,000</td></tr><tr><td>주거·교육 급여 차상위계층</td><td>170,000</td><td>110,000</td></tr><tr><td>생계·의료 급여 (시설)</td><td>90,000</td><td>30,000</td></tr></table>	구분	중증장애 아동수당	경증장애 아동수당	생계·의료 급여 (재가)	220,000	110,000	주거·교육 급여 차상위계층	170,000	110,000	생계·의료 급여 (시설)	90,000	30,000	읍·면·동 신청																				
구분	중증장애 아동수당	경증장애 아동수당																																	
생계·의료 급여 (재가)	220,000	110,000																																	
주거·교육 급여 차상위계층	170,000	110,000																																	
생계·의료 급여 (시설)	90,000	30,000																																	
2-4. 중증장애인 시비특별 수당 지원 (중전 1~3급)	■ 장애수당 18세이상의 중전 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중 재가 생계·의료 수급자 ■ 장애아동수당 18세미만의 중전 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중 재가 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수당 생계·의료 수급자 : 월 3만원 ■ 장애아동수당 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월3만원	읍·면·동 신청																																

1 장애인연금
신청자격·요건·
신청방법

2 장애인연금
수급액

3 장애인연금
지출·징수

4 재의결
지침

5 발달장애
아동

6 서비스

7 일자리
지원

2026년 장애인복지서비스 한권으로 알아보기

3. 보육·교육 지원

사업명	신청자격(지원대상)	지 원 내 용	비 고
3-1. 장애아 보육료 지원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12세 이하의 미취학 장애아동 ■ 다음의 경우 예외 지원 가능 - (5세 이하)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 (3~8세)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	■ 기본보육료 지원(09:00~16:00) - 장애아 보육료 : 63만4천원/월 - 누리(3~5세장애아)보육료 : 63만4천원/월 ■ 연장보육료 지원(16:00~19:30) : 3,000원/시간, 30분 단위로 보육료 생성 * 가구소득수준과 무관	읍·면·동 신청
3-2. 장애아동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 장애아보육료(취학전) 지원 장애아동 - 단,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장애아동에 대해 야간연장 보육에 한하여 지원 - 복지카드 미소지자인 취학 장애아동은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 시 8세까지 지원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중 기본 및 연장보육시간(07:30~19:30)을 경과하여 보육이 필요한 경우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한 시간만큼 보육료 지급 ■ 지원 종류 - 야간연장 보육(평일 19:30~24:00, 토요일 15:30~24:00) · 지원단가 : 5,000원/시간, 1시간 단위로 보육료 생성, 야간연장 보육서비스만 이용하는 아동은 정부지원 불가 - 야간12시간 보육(19:30~익일 07:30) - 24시간보육(07:30~익일 07:30) - 휴일보육(일요일, 공휴일 07:30~19:30)	읍·면·동 신청
3-3.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	■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장애아동	■ 방과후에 일일 4시간 이상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 지급 - 31만7천원/월	읍·면·동 신청
3-4.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종전 1~3급)	■ 만 18세 미만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 ■ 소득기준 : 없음 * 기준 중위소득 120% 이상인 경우 본인부담금 발생 * 장애인활동지원, 아이돌봄서비스,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는 제외	■ 아동 1인당 연 1,200시간 범위내 지원 ■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에서 돌봄서비스 제공(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 지원)	읍·면·동 신청 대구장애인부모회 ☎053-621-2600
3-5. 장애아동 가정양육 수당 지원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미취학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의 가정양육 장애아동	■ 24~35개월 이하 : 월 200천원 ■ 36~86개월 미만 : 월 100천원 * 양육수당 지원 중 장애등록 시, 장애아동 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 필요	읍·면·동 신청

3. 보육·교육 지원



사업명	신청자격(지원대상)	지 원 내 용	비 고																																				
3-6.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	■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12세 이하 장애아동	■ 장애아전문어린이집 관내 17개소 지정·운영지원 ■ 장애아통합어린이집 관내 15개소 지정·운영지원 ※ 목록 및 연락처 별첨	구·군 또는 어린이집에 문의																																				
3-7. 장애아동 입양양육 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	■ 장애아동을 입양한 국내입양가정	■ 입양양육보조금 － 중증 장애아동 : 월 62만7천원 － 경증 장애아동 : 월 55만1천원 ■ 의료비 : 연 260만원 한도 ※ 만 18세 전까지 지원	읍·면·동 신청																																				
3-8.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등록장애인 중 출산장애인 (임신기간 4개월이상의 태아 유산·사산 포함)	■ 출산(유산, 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2백만원 지원 ■ 해산급여와 중복신청 가능	읍·면·동 신청																																				
3-9.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	■ 저소득 가정의 등록 여성장애인	■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및 가사활동 지원 － 가사도우미 파견 － 산후조리, 자녀양육, 가사활동 지원	대구장애인 종합복지관 ☎053-763-1011																																				
3-10.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대구시 모든 출산 가정 ※ 정부지원금은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 서비스 기간 <table><tr><th rowspan="2">태아 유형</th><th rowspan="2">출산 순위</th><th colspan="3">서비스기간</th></tr><tr><th>단축형</th><th>표준형</th><th>연장형</th></tr><tr><td rowspan="3">단태아</td><td>첫째아</td><td>5일</td><td>10일</td><td>15일</td></tr><tr><td>둘째아</td><td>10일</td><td>15일</td><td>20일</td></tr><tr><td>셋째아 이상</td><td>10일</td><td>15일</td><td>20일</td></tr><tr><td>쌍태아</td><td>인력1~2명</td><td>10일</td><td>15일</td><td>20일</td></tr><tr><td>삼태아</td><td>인력2~3명</td><td>15일</td><td>25일</td><td>40일</td></tr><tr><td>사태아</td><td>인력2~4명</td><td>15일</td><td>25일</td><td>40일</td></tr></table>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파견비용 지원 － 정부지원금 : 456~18,604천원 － 본인부담금 : 73~8,129천원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기간			단축형	표준형	연장형	단태아	첫째아	5일	10일	15일	둘째아	10일	15일	20일	셋째아 이상	10일	15일	20일	쌍태아	인력1~2명	10일	15일	20일	삼태아	인력2~3명	15일	25일	40일	사태아	인력2~4명	15일	25일	40일	구·군 보건소에 신청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기간																																					
		단축형	표준형	연장형																																			
단태아	첫째아	5일	10일	15일																																			
	둘째아	10일	15일	20일																																			
	셋째아 이상	10일	15일	20일																																			
쌍태아	인력1~2명	10일	15일	20일																																			
삼태아	인력2~3명	15일	25일	40일																																			
사태아	인력2~4명	15일	25일	40일																																			
3-11.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 등록 여성장애인 * 저소득·저학력 우선 지원	■ 여성장애인에 대한 교육지원 － 상담 및 사례관리 － 역량강화교육 － 자조모임 등 ■ 교육기간 : 3~12월	대구장애인재활협회 ☎053-255-8166 대구여성장애인연대 ☎053-637-6061																																				

1 장애인
관련 정보

2 정부 및 시도

3 보육·교육
지원

4 재의
활 지원

5 발달장애
인

6 서
비 스

7 일
자 리 지
원

2026년 장애인복지서비스 한권으로 알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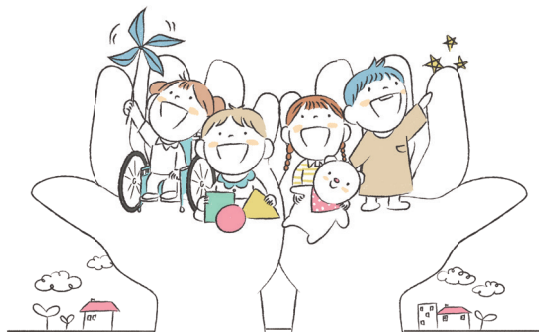
사업명	신청자격(지원대상)	지 원 내 용	비 고
3-12. 장애인 정보화 교육	■ 등록장애인 및 장애인의 활동을 보조하는 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 및 자녀	■ 장애인 정보화 교육기관에서 PC 운용, 생활활용, 멀티미디어 등 무료 교육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053-230-1392 또는 집합정보화교육기관에 문의 대구달구벌종합복지관 ☎053-527-0228 대구시각장애인복지관 ☎053-719-4043 안심제1종합사회복지관 ☎053-962-3831
3-13.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 고등교육법 제2조 및 개별 법률에 의해 설치된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신청 후 이용시간 내 도우미를 배치 받아 이용 가능	■ 교육지원인력을 통해 장애대학생에게 이동, 대필, 수어통역, 속기 등 대학 내 생활지원 및 학습지원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학생지원부서 문의
3-14. 질라라비 장애인야학 운영	■ 18세 이상 성인 장애인 ※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 학력인정과정 운영 - 초등·중학 학력 인정 성인 문해교육 ■ 평생교육과정 운영 - 기초문해, 학력보완, 문화예술, 직업능력, 시민참여, 인문교양, 자립지원 등 ■ 특별활동 - 동아리, 수학여행, 문화제 등	질라라비장애인야학 ☎053-953-9461
3-15.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 19세 이상 장애인	■ 성인 장애인의 자기계발 및 자아실현을 위한 평생교육 참여 기회 제공 - 지원금액 : 1인 35만원 - 지원방법 : NH농협채움카드 포인트 충전 - 사용범위 :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에서 수강료 및 교재비로 사용 - 신청방법 • (온라인) 정부24(혜택알리미) 신청 • (방 문) 대구평생교육진흥원 및 구·군 평생교육 담당부서 - 사용기관 :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 참고 ※ 모집 기간 내 신청하여 선정 시 이용 가능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상담센터 ☎1668-0420 대구평생교육진흥원 ☎053-210-5683

3. 보육·교육 지원



■ 장애아전문, 통합어린이집 목록 (2026.1.31.기준)

연번	어린이집명	원장	전화번호	주 소
1	에코어린이집	신동기	053-958-0822	대구광역시 동구 평화로 51
2	키즈로스쿨어린이집	임순예	053-965-0090	대구광역시 동구 반야월로26길 61-2 (신기동)
3	예쁜어린이집	오연희	053-964-4111	대구광역시 동구 반야월북로55길 45 (신서동)
4	종교법인반야월중앙어린이집	신정혜	053-963-3911	대구광역시 동구 경안로101길 46 (서호동)
5	구립 분도어린이집	조영은	053-558-2645	대구광역시 서구 달구벌대로365길 3 (서구종합사회복지관내) (내당동)
6	병아리어린이집	김태숙	053-653-2293	대구광역시 남구 현충로25길 42-9 (대명동)
7	해와달어린이집	임창배	053-325-0142	대구광역시 북구 도남길 57-1 해와달어린이집 (국우동)
8	국공립색동어린이집	김화옥	053-784-2223	대구광역시 수성구 용학로44길 34
9	효성어린이집	이순혜	053-636-4363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로 113 (송현동, 본동주공아파트)
10	큰별어린이집	최경숙	053-581-4168	대구광역시 달서구 선원로23복길 16-10 (이곡동)
11	상록수어린이집	이동률	053-642-6642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23길 51 (진천동)
12	남동어린이집	김성희	053-615-7979	대구광역시 달성군 남리길 32-6
13	보문어린이집	문정혜	053-592-8815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다사로 82-2
14	해피아이어린이집	이윤양	053-583-7100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대실역북로 96
15	자연과학어린이집	홍혜민	053-611-4800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현풍동로25길 17



1 장애인
관련 정보

2 장애인
복지 서비스

3 보육·교육
지원

4 의료
재활 지원

5 발달장애
인 지원

6 서비스

7 일자리
지원

2026년 장애인복지서비스 한권으로 알아보기

4. 의료 및 재활 지원

사업명		신청자격(지원대상)	지 원 내 용	비 고
4-1.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인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 등록장애인 (만성질환 및 18세미만 장애인)	■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본인부담금 1,500원 중 750원 지원 (원내 직접 조제) - 본인부담금 1,000원 중 750원 지원 (그외의 경우) ■ 2차, 3차 의료기관 진료 - 본인부담금(급여비용총액의 15%) 전액 지원 ※ 식대 및 약제비는 미지원	외래, 입원진료시 장애인등록증, 의료급여증, 건강보험증 제시
4-2. 건강 보험 지역 가입자 보험료 경감	자동차분 건강 보험료 전액 면제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한 등록된 장애인 소유 자동차	■ 해당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산정시 제외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1577-1000 ※ 별도신청 불필요
	산출 보험료 경감	■ 지역가입자로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 1억 3천5백만원 이하	■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30%감면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등록장애인 : 20%감면	
	장기 요양 보험료 경감	■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장기요양보험료의 30% 감면	
4-3. 장애 등록 진단서 발급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등록장애인 ■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등록장애인 중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직권재판정 대상자(소득 무관)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 : 4만원 - 그 외 장애 : 1만 5천원	읍·면·동 신청
4-4. 장애 등록 검사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등록장애인 ■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등록 장애인 중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직권재판정 대상자(소득 무관)	■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	읍·면·동 신청

4. 의료 및 재활 지원



사업명	신청자격(지원대상)	지 원 내 용	비 고
4-5. 발달재활 서비스	■ 연령기준 :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 ■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장애아동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소득별 차등지원) ※ 장애인등록이 안된 만 6세 미만 아동은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세부영역 검사결과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가능	■ 매월 18~26만원의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이용 ※ 본인부담금 : 기초생활수급자 면제, 차상위계층 2만원, 차상위초과 4~8만원 ■ 언어 · 청능, 미술 · 음악, 행동 · 놀이 · 심리, 감각 · 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읍 · 면 · 동 신청
4-6. 언어발달 지원	■ 연령기준 : 만 12세 미만의 비장애아동 (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부모가 시각 · 청각 · 언어 · 지적 · 뇌병변 · 자폐성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소득별 차등지원)	■ 매월 18~24만원의 언어재활 등 바우처 지원 ※ 본인부담금 : 기초생활수급자 면제, 차상위계층 2만원, 차상위초과 4~6만원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 · 청능 등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화지도	읍 · 면 · 동 신청
4-7. 특수교육 대상자 치료지원 서비스	■ 특수교육대상자 중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치료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	■ 병원원, 장애인복지관, 사설치료실 등에서 특수교육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의 서비스 지원 ※ 발달재활서비스와 동일 영역일 경우에는 중복지원 불가	소속 학교 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 신청 교육부 민원콜센터 ☎02-6222-6060 대구시 교육청 ☎053-231-0941
4-8. 장애인 의료재활 시설 운영	■ 등록장애인	■ 지원 내용 - 장애의 진단 및 치료 - 재활보조기구 제작 및 수리 - 장애인 의료재활상담 등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무료, 그 외의 자는 실비부담	의료급여증,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인제재활병원 ☎053-752-8683

1 장애인복지관
관련 정보

2 장애인복지관
정보

3 장애인복지관
지원

4 의료 및
재활 지원

5 발달장애
인

6 서비스

7 일자리 지원

2026년 장애인복지서비스 한권으로 알아보기

사업명	신청자격(지원대상)	지 원 내 용	비 고														
4-9.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운영	■ 집중재활치료 및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영유아기 아동 및 중증장애아동	■ 집중재활치료 및 의료서비스 제공 ■ 재활체육 ■ 보조기기 체험,교육프로그램 ■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대구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053-250-8741														
4-10. 보건소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 등록장애인 등	■ 방문재활서비스 지원 ■ 장애인 건강증진 및 재활 프로그램 운영 ■ 지역사회 보건·복지 자원연계	구·군 보건소에 신청														
4-11. 대구지역 장애인보건 의료센터 운영	■ 등록장애인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 여성장애인 모성보건관리 ■ 건강검진, 진료, 재활 등 의료서비스 제공 및 연계 지원 ■ 보건의료인력 및 장애인·가족에 대한 교육 지원	대구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053-200-7661~6														
4-12. 장애인 구강진료 센터 운영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소지 장애인 －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장애인 복지카드, 3개월 이내 발급된 장애인증명서만 유효	■ 지원내용 － 치과 비급여 진료비 지원 － 구강검진, 구강건강관리 교육 등 ■ 진료비 지원기준 <table><tr><th>구분</th><th>세부 지원 내용</th></tr><tr><td>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td><td>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지원</td></tr><tr><td>치과영역 중증장애인*</td><td>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 지원</td></tr><tr><td>기타 장애인</td><td>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 지원</td></tr></table> * 치과영역 중증장애인 <table><tr><th>장애유형</th><th>해당정도</th></tr><tr><td>뇌병변·뇌전증장애</td><td>중증, 경증</td></tr><tr><td>정신·지체·지적·자폐성장애</td><td>중증</td></tr></table>	구분	세부 지원 내용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지원	치과영역 중증장애인*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 지원	기타 장애인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 지원	장애유형	해당정도	뇌병변·뇌전증장애	중증, 경증	정신·지체·지적·자폐성장애	중증	경북대학교치과병원 장애인구강진료센터 ☎053-600-7701~2 ※ 접수 시 장애인 치과 진료 별도 접수
구분	세부 지원 내용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지원																
치과영역 중증장애인*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 지원																
기타 장애인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 지원																
장애유형	해당정도																
뇌병변·뇌전증장애	중증, 경증																
정신·지체·지적·자폐성장애	중증																
4-13. 장애인 건강검진 사업	■ 등록장애인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지참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건강검진 및 국가 암검진과 동일	대구의료원 장애인건강검진센터 ☎053-560-7397 (사전예약 필요)														
4-14. 대구광역시 보조기기센터 운영	■ 등록장애인	■ 보조기기 상담 및 정보제공사업 ■ 보조기기 맞춤형 지원사업 ■ 사후관리 지원사업 ■ 교육 및 홍보사업	대구광역시 보조기기센터 ☎053-650-8340~3														

4. 의료 및 재활 지원



사업명	신청자격(지원대상)	지원 내용		비고
4-15.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 (장애유형)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기·언어·자폐성·지적장애 ■ (소득수준)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유형	지원품목(46개)	음·면·동 신청
		지체·뇌병변	롤레이터(보행차)	
			좌석형 보행차	
			탁자형 보행차	
			기립틀 및 기립을 위한 지지대(기립훈련기)	
			목욕의자	
			경사로(휴대용 경사로)	
			이동변기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환경 제어 장치	
			지지대 및 손잡이(안전손잡이)	
			유모차형 이동보조기기	
			바닥 특수 앞기 자세유지용 장치	
			목욕용 미끄럼방지용품	
			장애인용 카시트	
			수동 조작형 팔 지지대	
			전동칫솔	
		지체·뇌병변·자폐성	음식섭취 보조기기(음식 섭취용 보조기기 등)	
			음식섭취 보조기기(식사도구, 젓가락 등)	
			음식섭취 보조기기(머그컵, 유리컵 등)	
			음식섭취 보조기기(접시 및 그릇)	
			음식섭취 보조기기(음식 보호대)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	미끄럼 및 회전을 위한 보조기기	
			의류 및 신발(장애인용 의복)	
			휠체어 액세서리	
			침대 및 탈착식 침대판	
			소변수집장치	
			개인 비상 경보 알림시스템(낙상알림기)	
			독서용 탁자, 책상 및 기립형 책상	
		지체·뇌병변·지적·자폐성	기억 지원 보조기기	
		뇌병변·지적·자폐성·청각·언어	대화용 장치	
		뇌병변	전자기기 작동 및 제어를 위한 보조기기용 액세서리(스위치)	
		심장·호흡기	욕창예방 방석	
			욕창예방 매트리스	
		시각	음성유도장치(리모컨), 음성시계	
			영상 확대 시스템(독서확대기)	
			OCR장치 및 OCR소프트웨어	
			키보드(모바일제어 특수키보드)	
			텍스트 음성변환 장치 및 소프트웨어	
			DAISY 플레이어 및 전자책 리더	
			촉각시계, 점자 훈련용 보조기기	
		청각	신호장치, 진동시계, 소리증폭기	
			다기능 의사소통 시스템(영상전화기)	

1 장애인
관련 정보

2 정부 및 시도

3 교육·문화·체육
지원

4 의료 및
재활 지원

5 발달장애인
지원

6 서비스

7 일자리 지원

2026년 장애인복지서비스 한권으로 알아보기

사업명	신청자격(지원대상)	지 원 내 용	비 고																			
4-16.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이동보조기기 소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 30만원 이내/년 ■차상위초과 장애인 : 20만원 이내/년	읍·면·동 신청																			
4-17. 장애인 보조기기 건강보험 급여 및 의료급여 적용	■건강보험 : 등록장애인 중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 : 등록장애인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내용 <table><tr><th>구분</th><th>세부 지원 내용</th></tr><tr><td>건강보험 대상자</td><td>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90%를 공단에서 부담 ※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자세 보조용구는 기준액·고시액·실구입가액 중 낮은 금액의 90%를 공단이 부담</td></tr><tr><td>의료급여 수급권자</td><td>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고시액·실구입가액 중 낮은 금액을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td></tr></table> ■지원품목 -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자세보조용구, 목발, 의지·보조기·맞춤형 교정용 신발 등	구분	세부 지원 내용	건강보험 대상자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90%를 공단에서 부담 ※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자세 보조용구는 기준액·고시액·실구입가액 중 낮은 금액의 90%를 공단이 부담	의료급여 수급권자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고시액·실구입가액 중 낮은 금액을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	건강보험 : 건강보험공단 ☎1577-1000 의료급여 : 읍·면·동 신청													
구분	세부 지원 내용																					
건강보험 대상자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90%를 공단에서 부담 ※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자세 보조용구는 기준액·고시액·실구입가액 중 낮은 금액의 90%를 공단이 부담																					
의료급여 수급권자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고시액·실구입가액 중 낮은 금액을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																					
4-18.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만 65세 미만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진단서첨부) ③ 희귀난치성 질환자 ④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⑤ 만 65세미만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⑥ 기타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일정시간 동안 가사·간병 서비스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지급 ■지원내용 <table><tr><th rowspan="2">구분 (월)</th><th>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th><th>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th><th>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th></tr><tr><th>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th><th>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th><th>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th></tr><tr><td>24 시간</td><td>456,000원 (면제)</td><td>428,640원 (27,360원)</td><td>-</td></tr><tr><td>27 시간</td><td>497,610원 (15,390원)</td><td>482,220원 (30,780원)</td><td>-</td></tr><tr><td>40 시간</td><td>-</td><td>-</td><td>760,000원 (면제)</td></tr></table>	구분 (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24 시간	456,000원 (면제)	428,640원 (27,360원)	-	27 시간	497,610원 (15,390원)	482,220원 (30,780원)	-	40 시간	-	-	760,000원 (면제)	읍·면·동 신청
구분 (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24 시간	456,000원 (면제)	428,640원 (27,360원)	-																			
27 시간	497,610원 (15,390원)	482,220원 (30,780원)	-																			
40 시간	-	-	760,000원 (면제)																			

4. 의료 및 재활 지원



사업명		신청자격(지원대상)	지 원 내 용	비 고															
4-19.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 만 24세 이하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청소년, 척수장애 또는 근위축증으로 의사진단서 발급 가능한 아동·청소년	■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청소년 등에게 성장단계에 맞는 휠체어나 자세유지기구 렌탈 및 리폼서비스 제공 ■ 제공기간 : 12개월(재판정 5회) ■ 서비스 가격 : 월12만원 <table><tr><th rowspan="2">구분 (월)</th><th>A등급</th><th>B등급</th><th>C등급</th></tr><tr><th>수급자, 차상위</th><th>중위소득 140% 이하 중 수급자, 차상위가 아닌자</th><th>중위소득 140% 초과</th></tr><tr><td>정부 지원금</td><td>108,000원</td><td>96,000원</td><td>84,000원</td></tr><tr><td>본인 부담금</td><td>12,000원</td><td>24,000원</td><td>36,000원</td></tr></table>	구분 (월)	A등급	B등급	C등급	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 140% 이하 중 수급자, 차상위가 아닌자	중위소득 140% 초과	정부 지원금	108,000원	96,000원	84,000원	본인 부담금	12,000원	24,000원	36,000원	읍·면·동 신청
	구분 (월)	A등급	B등급		C등급														
		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 140% 이하 중 수급자, 차상위가 아닌자	중위소득 140% 초과															
정부 지원금	108,000원	96,000원	84,000원																
본인 부담금	12,000원	24,000원	36,000원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 만 60세 이상 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자, 19세 이상 지체·뇌병변 등록장애인 등	■ 전신안마, 마사지, 발마사지, 자극요법 ■ 제공기간 : 12개월(재판정 1회) ■ 서비스가격 : 월 168천원 <table><tr><th rowspan="2">구분</th><th>A등급</th><th>B등급</th><th>C등급</th></tr><tr><th>수급자, 차상위</th><th>중위소득 120% 이하 중 수급자, 차상위가 아닌자</th><th>중위소득 120% 초과~150% 이하</th></tr><tr><td>정부 지원금</td><td>151,200원</td><td>142,800원</td><td>134,400원</td></tr><tr><td>본인 부담금</td><td>16,800원</td><td>25,200원</td><td>33,600원</td></tr></table>	구분	A등급	B등급	C등급	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 120% 이하 중 수급자, 차상위가 아닌자	중위소득 120% 초과~150% 이하	정부 지원금	151,200원	142,800원	134,400원	본인 부담금	16,800원	25,200원	33,600원	읍·면·동 신청	
구분	A등급	B등급		C등급															
	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 120% 이하 중 수급자, 차상위가 아닌자	중위소득 120% 초과~150% 이하																
정부 지원금	151,200원	142,800원	134,400원																
본인 부담금	16,800원	25,200원	33,600원																
정신건강 증진 서비스	■ 만 15세 이상 등록된 정신장애인,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서 및 진단서, 진료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자 (낮병동 이용자 이용불가)	■ 정신건강 및 위기관리 코칭, 약물복용관리, 가족관계 증진활동 ■ 제공기간 : 12개월(재판정 2회) ■ 서비스가격 : 월22만원 <table><tr><th rowspan="2">구분</th><th>A등급</th><th>B등급</th><th>C등급</th></tr><tr><th>수급자, 차상위</th><th>중위소득 140% 이하 중 수급자, 차상위가 아닌자</th><th>중위소득 140% 초과</th></tr><tr><td>정부 지원금</td><td>200,000원</td><td>176,000원</td><td>154,000원</td></tr><tr><td>본인 부담금</td><td>20,000원</td><td>44,000원</td><td>66,000원</td></tr></table>	구분	A등급	B등급	C등급	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 140% 이하 중 수급자, 차상위가 아닌자	중위소득 140% 초과	정부 지원금	200,000원	176,000원	154,000원	본인 부담금	20,000원	44,000원	66,000원	읍·면·동 신청	
구분	A등급	B등급		C등급															
	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 140% 이하 중 수급자, 차상위가 아닌자	중위소득 140% 초과																
정부 지원금	200,000원	176,000원	154,000원																
본인 부담금	20,000원	44,000원	66,000원																

1 장애인
관련 정보

2 직업 및 취업

3 교육·훈련
지원

4 의료 및
재활 지원

5 발달장애인
지원

6 서비스

7 일자리 지원

5.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명	신청자격(지원대상)	지 원 내 용	비 고
5-1. 대구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운영	■ 발달장애인 및 가족	■ 사업내용 -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 복지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 - 발달장애인 및 가족에 대한 상담 지원 - 공공후견업무 지원 및 발달장애인 권리구제 지원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운영지원 등	대구발달장애인 지원센터 ☎053-719-0340
5-2.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사업	■ 18세 이상 재가 자폐성 및 지적 장애인 ※ 특수학교(학급) 졸업 예정자,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의 대기자 등	■ 사업내용 - 자립생활 교육 프로그램 - 문화 및 여가 지원 프로그램 - 직업탐색 및 고용연계지원 프로그램 - 자립주거체험 등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대구사람장애인 자립생활센터 ☎053-295-4240 장애인지역공동체 ☎053-953-9460 제일종합사회복지관 ☎053-353-8310 남구종합사회복지관 ☎053-476-7700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구지부북구지회 ☎053-311-6903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053-751-6902 학산종합사회복지관 ☎053-634-7230 달성군장애인복지관 ☎053-616-0260
5-3.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 학령기 이후(만18세 이상) 발달장애인	■ 교육과정 - 정규반(3년 과정) 의사소통, 일상생활훈련, 사회적응, 직업전환교육 등 - 단과반(2~3개월) 여가, 문화, 스포츠 등	대구광역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053-650-8295
5-4.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 18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	■ 18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낮시간 동안에 주간활동서비스 제공 ■ 제공시간 : 기본형 132시간(일일 6시간), 확장형 176시간(일일 8시간) 중 선택 ■ 서비스 내용 : 자조모임, 건강증진 활동, 여가활동, 문화관람 등(2~3인 그룹활동) ■ 서비스 절차 : 이용자 선정(구군) → 제공기관 선택 및 계약(이용자) → 서비스 제공(제공기관) → 비용지급(사회보장정보원)	읍·면·동 신청

5.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명	신청자격(지원대상)	지 원 내 용	비 고
5-5.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	■ 6세 이상 18세 미만 재학 중인 발달장애학생	■ 일반 중 ·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발달장애 학생에게 방과 후 활동서비스 제공 ■ 제공시간 : 월66시간 ■ 서비스 내용 : 취미여가, 직업탐구, 자립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2~4인 그룹활동) ■ 서비스 절차 : 이용자 선정(구군) → 제공기관 선택 및 계약(이용자) → 서비스 제공(제공기관) → 비용지급(사회보장정보원)	읍 · 면 · 동 신청
5-6.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서비스	■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발달장애인 중 보호자의 치료 · 입원, 경조사, 심리적 소진 등 긴급상황으로 일시돌봄이 필요한 자	■ 지원내용 : 일시적(7일) 24시간 돌봄지원 - 이용기간 : 1회 입소시 1~7일(연 최대 30일) - 이용료 : 1일 15천원(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무료), 식비 15천원	대구발달장애인 지원센터 ☎053-719-0340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053-716-1195
5-7.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서비스	■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최중증 발달장애인 중 보호자의 치료 · 입원, 경조사, 심리적 소진 등 긴급상황으로 일시 돌봄이 필요한 자	■ 지원내용 : 일시적(5일) 24시간 돌봄지원 - 이용기간 : 1회 입소시 1~5일(연 최대 30일) - 이용료 : 1일 15천원(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무료), 식비 15천원	대구발달장애인 지원센터 ☎053-719-0340 최중증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053-716-1193
5-8.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 발달장애인 중 도전적 행동(자해 · 타해)을 수반하는 등 장애정도가 극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 지원내용 :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 (24시간 개별 1:1 지원) 낮활동 서비스 및 야간 주거지원을 통한 24시간 돌봄서비스 지원 - (주간 개별 1:1 지원) 이용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낮 활동 서비스 제공 - (주간 그룹 1:1 지원) 바우처를 통한 그룹형 1:1 낮활동 서비스 제공	읍 · 면 · 동 신청
5-9.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심판청구 비용지원	■ 만 19세이상 발달장애인 (지적 · 자폐성장애인)	■ 공공후견인 선임을 위해 가정법원 심판청구 시 소요되는 인지대 등 행정비용 지원(청구 건당 최대 50만원)	읍 · 면 · 동 신청

1 장애인
관련 정보

2 장애인
복지 서비스

3 장애인
복지 서비스

4 장애인
복지 서비스

5 장애인
복지 서비스

6 장애인
복지 서비스

7 장애인
복지 서비스

2026년 장애인복지서비스 한권으로 알아보기

사업명	신청자격(지원대상)	지 원 내 용	비 고								
5-10.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활동비용지원	가정법원에서 발달장애인의 공공후견인으로 선임 결정을 받은 자	- 공공후견인 활동지원비(월20만원) - 월 지급 상한(월60만원) : 1인 20만원, 2인 40만원, 3인 이상 60만원	읍·면·동 신청								
5-11.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사업 (바우처)	발달장애인 (지적·자폐성)의 부모 및 보호자	- 지원기간 : 기본 12개월, 연장 12개월 가능 ※ 회당 50분, 월4회 이상 - 지원금액 : 1인당 월 20만원 이하 - 정부바우처 16만원 지원 - 초과비용 본인부담	읍·면·동 신청								
5-12. 발달장애인 부모교육 지원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 가족, 관련분야 종사자 대상 교육 실시	- 영유아기 자녀, 성인전환기 자녀를 둔 발달장애인 부모 교육을 통한 자녀 양육기술 역량강화 - 영유아기 부모교육 - 성인전환기 발달장애인 자녀 진로상담 및 코칭 부모교육 - 성·인권 교육	대구발달장애인 지원센터 ☎053-719-0340								
5-13.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	- 지원내용 - 힐링캠프 : 가족캠프, 인식개선캠프, 동료상담캠프 - 테마여행 : 역사, 문화, 기관방문 등 - 지원금액 - 공동사항 : 참여자 1인당 최대 지원금액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당일</th><th>1박2일</th><th>2박3일</th></tr> </thead> <tbody> <tr> <td>참여자 1인당 캠프(여행)비용</td><td>135,000원</td><td>260,000원</td><td>400,000원</td></tr> </tbody> </table>	구분	당일	1박2일	2박3일	참여자 1인당 캠프(여행)비용	135,000원	260,000원	400,000원	대구광역시 장애인부모회 ☎053-621-2600
구분	당일	1박2일	2박3일								
참여자 1인당 캠프(여행)비용	135,000원	260,000원	400,000원								



6. 서비스

[활동지원]

사업명	신청자격(지원대상)	지 원 내 용	비 고
6-1. 장애인 활동 지원(바우처)	만 6세 이상 ~ 65세 미만의 모든 등록장애인 중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산출된 종합점수에 따른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	■급여내용 - 활동보조(신체·가사사회활동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긴급활동지원 ■지원내역 - 급여량(월) : 1,040천원(60시간) ~ 8,293천원(480시간) - 급여등급 : 1~15구간 ■본인부담금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면제 - 차상위계층 등 : 2만원 - 차상위초과 : 최대 216,200원 이내	읍·면·동 신청
6-2. 장애인 활동 지원 시비 추가지원 (바우처)	■활동지원 종합조사 1~6구간(315점 이상) 대상자 중 추가지원이 필요한 활동지원 수급자(12개 항목) * 외상, 희귀난치성, 최종증, 중복, 탈시설, 직장, 본인의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 ■법정급여 미지원 발달장애인(독거 등), 자립생활체험홈 단기체험 장애인 등	■급여내용 : 장애인 활동지원과 동일 ■지원내역 - 12개 항목 : 항목당 월 20~180시간 가산 - 법정급여 미수급 발달장애인(독거 등) : 월 40시간 정액 - 체험홈 단기체험장애인 : 70~300시간 ※ 월급여액 : 1인당 월 346~3,454천원 (20~200시간) * 단, 최종증장애인 1일24시간 활동지원 : 월 7,427천원(430시간)까지 지원 ■본인부담금 : 없음	읍·면·동 신청
6-3. 최종증 장애인 야간순회 방문서비스	■활동지원 인정점수 400점 또는 종합조사 기능제한(X1) 점수 360점 이상인 활동지원 수급자로서, 사지마비, 외상, 호흡기 착용 등으로 심야시간대 돌봄이 필요한 최종증장애인 * 1일 24시간 활동지원 대상자는 제외	■지원내용 : 순회돌보미가 대상자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돌봄서비스 제공 ■방문시간 : 22시(밤10시) ~ 익일 오전3시	구·군 상담

2026년 장애인복지서비스 한권으로 알아보기

[거주시설 이용 지원]

사업명	신청자격(지원대상)	지 원 내 용	비 고
6-4.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 우선 입소 대상 -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기능제한(X1) 점수 만족하는 자 • 중증 : 성인 240점, 아동 190점 • 유형별 : 성인 120점, 아동 110점 ■ 실비입소이용자 - 종합조사 결과를 충족하고 시설 소재지 관할 구·군 담당부서에서 입소 결정	■ 거주시설 입소 보호 - 일정기간 거주·요양·지원 - 사회심리 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 상담치료, 사회적응 훈련 등 지원 ■ 공동생활가정 및 단기거주시설 - 지역사회 내 일반주택을 이용하여 장애인들의 가정생활, 사회활동 등의 자립생활 지원 - 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의 단기간 휴식 제공	읍·면·동 신청
6-5. 실비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이용료 지원	■ 실비 장애인거주시설 입소한 장애인	■ 실비장애인거주시설 입소시 입소비용 최대 490,700원 (단, 지적, 자폐성 장애인은 월 34천원, 영유아 및 중증장애인은 월51천원 추가 수납 할 수 있음.) ※ 장애인 또는 보호자와 시설장이 입소계약 체결	읍·면·동 신청 요한의집 ☎053-963-7564 카리타스 달서구보금자리 ☎053-721-7090



[주택 지원]

사업명	신청자격(지원대상)	지 원 내 용	비 고
6-6. 공동주택 특별 공급 알선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구성원 장애인(신청인) * 지적장애인 · 정신장애인 및 중증의 뇌병변 장애인의 배우자 포함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특별 공급	읍 · 면 · 동 신청, LH공사 ☎1600-1004 문의 후 신청
6-7. 장애인 맞춤주택 리모델링 사업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자가 또는 임대주택 거주장애인	■ 가구당 800만원 이하 - 경사로 설치, 화장실 개조, 문턱 제거, 싱크대 높낮이 교체 등 * 남구, 달성군, 군위군 제외 (6-8.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으로 지원)	읍 · 면 · 동 신청
6-8.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국토교통부)	■ 달성군, 군위군, 남구 거주 등록장애인으로 장애인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	■ 가구당 380만원 이내 -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낮추기, 싱크대 높이 조절, 주출입구 접근로(마당포장), 경사로 설치 등 주택 내 편의시설 · 안전장치 설치 지원	읍 · 면 · 동 신청
6-9.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대구도시 개발공사)	■ 대구도시개발공사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 영구임대주택 1순위 입주자격자	■ 지원내용 : 입주계약 시 임대보증금의 50%(최대 150만원)를 무이자 지원 * 기존입주자 : 동 · 호수 변경에 따른 보증금 증액분 이내(최대 150만원) ■ 지원절차 : 신청 → 자격확인(읍면동) → 대상자선정(시) → 보증금 지원(대구도시개발공사) ■ 상환방법 : 24개월간 원금 무이자 균등상환	읍 · 면 · 동 신청

1 장애인
관련 정보

2 저소득
계층

3 보육·건강
지원

4 의료
지원

5 장애인
지원

6 서비스

7 일자리
지원

2026년 장애인복지서비스 한권으로 알아보기

[이동편의 지원]

사업명	신청자격(지원대상)	지 원 내 용	비 고
6-10. 장애인특별 운송사업 운영	■ 등록장애인	■ 리프트가 장착된 특장차 운영 - 셔틀버스(1대) : 정기노선 순환운행	전석복지재단 ☎053-652-5997~8
6-11. 장애인 초저상버스 (Easy Bus) 운영	■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 교통약자	■ 운행차량 : 1대(24인승 버스) - 휠체어 좌석 2개 포함 ■ 운행횟수 : 1일 3회, 월~금 - 27개 정류장 순환운영 (왕복 1시간 40분)	달구벌종합복지관 ☎053-527-0223
6-12. 특별 교통수단 (나드리콜) 이용	■ 이용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보행상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3등급) - 그 외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중 버스·지하철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 제출자 - 65세 이상으로서 장기요양인정서(1-3등급) 제출자 -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으로서 특정 장애인 사회서비스(활동지원 등)를 받는 자	■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장비 등을 장착한 차량 및 장애인콜택시 운행 - 나드리콜 특장차 218대 - 나드리콜 콜택시 336대 ■ 이용등록 : 방문 및 인터넷 신청, 팩스(603-4039) ■ 이용요금 : 기본 1,000원 ~ 최고 시내 4,500원 / 시외 9,000원 * 나드리콜 이용시 대구시내 유료도로 무료 이용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이동지원센터 (nadrihome.dpfc.or.kr) ☎1577-6776 ※ 청각장애인전용 문자신청번호 ☎013-3366-2214



사업명	신청자격(지원대상)	지 원 내 용	비 고
6-13.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보행장애가 있는 국내거소신고 재외동포나 등록외국인 명의의 자동차 1대 ■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노인의료복지시설, 장애인담여린이집 명의의 목적사업용 자동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명의로 장애인 통학용 자동차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 장애인이 1년이상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 또는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 주차가능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가능 ※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 인정	읍·면·동 신청
6-14.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 지체·뇌병변·청각장애인 대상	■ 교육대상자가 원하는 지역으로 차량과 강사가 직접 찾아가서 교육 - 교육비용 무료(단, 운전면허취득 시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개인부담)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 ☎02-901-1553
6-15.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교육 사업안내	■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1~4급),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 취득 조건 - 시력 • 1종 면허 : 좌·우 시력 각각 0.5 이상, 양안 0.8 이상 • 2종 면허 : 양안 시력 0.5 이상, 단안시력 0.6 이상 • 단 안 : 좋은 눈 0.8이상, 수평시야 120도 이상, 수직시야 20도 이상, 중심 시야 20도 내 암점 또는 반맹 없을 것 - 청력 • 1종 대형, 특수면허는 55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 보청기 사용 시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 신체장애 • 운동능력측정에 합격한 자 - 발달, 정신장애 • 운전적성판정위원회에 합격한 자 - 그 외 장애 • 별도의 취득 조건은 없으며, 상담 후 진행	■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교육(학과, 기능, 도로주행) ■ 무상교육 지원 - 신청절차 1) 기관별 유선문의 2) 본인방문 3) 상담 및 접수 - 준비물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및 장애증명서	한국도로교통공단 대구 디딤돌 운전면허지원센터 ☎053-320-2406 www.koroad.or.kr

1 장애인
관련 정보

2 장애인
복지 서비스

3 장애인
지원 서비스

4 장애인
재활 지원

5 장애인
발달장애

6 서비스

7 일자리 지원

2026년 장애인복지서비스 한권으로 알아보기

[문화 및 여가]

사업명	신청자격(지원대상)	지 원 내 용	비 고
6-16. 책나래 (장애인 무료 도서택배 서비스)	■ 등록장애인 ■ 장기요양대상자 ■ 국가유공상이자	■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택배로 신청 도서 대여 및 반납서비스 제공 ※ 거주지 가까운 도서관에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등을 제시하여 이용자 등록 후 이용가능	국채보상운동기념도서관 ☎053-231-2058 등 40개 공공도서관
6-17. 문화누리카드 (통합문화 이용권)	■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2020.12.31.이전 출생자) ■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 시 사용할 수 있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을 1인당 연간 15만원 지원 ■ (문화) 도서, 영화, 공연, 전시, 축제 등 ■ (관광) 철도, 국내항공, 테마파크, 숙박, 온천 등 ■ (체육) 스포츠 관람, 체육용품, 체육시설 등 ■ 청소년기(2008~2013년생) 및 준고령기(1962~66년생) 1만원 추가지원금 지급	읍·면·동 또는 ☎1544-3412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www.mnuri.kr)신청
6-18. 무장애로 즐기는 대구관광	■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동반자 등 관광약자 대상	■ 무장애로 즐기는 대구관광 홈페이지(www.wheeltour.or.kr) 통하여 대구시 무장애 관광정보 제공 - 9개 구/군별 관광지, 음식점(음식점/카페), 숙박시설 대상 무장애관광환경 정보 제공 - 관광안내소(15개소), 교통수단(지하철/장애인 콜택시), 먹거리골목, 대구 10미 소개, 기타 무장애관광 자료 제공 등	www.wheeltour.or.kr 참조
6-19. 민관협력 장애인 여행지원 (기아 초록여행 대구권역 운영)	■ 등록장애인 및 가족	■ 지원내용 : 여행 차량 무상 대여, 운전기사 지원 등 - (자유여행/선착순 예약) 차량 무상대여 - (미선여행/공모 후 선정) 차량 및 유류, 경비 지원, 필요시 운전기사 지원 - (테마여행/공모 후 선정) 차량 및 항공권 또는 KTX 승차권 지원, 고지대 탐방체험여행 등 ※ 운영 상황에 따라 지원내용 변동 가능 ■ 지원차량 : 장애 친화 차량(카니발) ※ 이용 1개월 전 신청	기아 초록여행 홈페이지 신청 (https://greentrip.kr) ☎1670-4943 (대구권역, 내선8번)

6. 서비스



사업명	신청자격(지원대상)	지 원 내 용	비 고
6-20. 장애인 생활체육 육성	■ 장애인	■ 대구광역시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 (https://www.dasad.or.kr)를 통해 장애인의 생활체육 활동 및 이용정보 제공 - 생활체육 프로그램, 교실, 생활체육대회 등 지원	대구광역시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 참조 (https://www.dasad.or.kr) ☎053-795-8050
6-21.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 5~69세 등록장애인	■ 지원금액 : 1인당 매월1만원 범위 내 ■ 지원내용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 이용 시 월 지원금액 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 지원기간 : 연12개월 ※ 신청기간 및 지자체 예산에 따라 지원기간 변동 가능	읍·면·동 또는 ☎1551-0078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신청 (https://dvoucher.kspo.or.kr)

[법률구조]

사업명	신청자격(지원대상)	지 원 내 용	비 고
6-22. 무료 법률 구조제도 신청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장애인 (외국인 포함) -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 법률 구조를 결정한 사건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 서비스 제공 - 무료 법률 상담 - 무료 민사·가사사건 소송 대리 (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소송비용 상환) -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보험수수료 본인 부담)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일부 무료이며, 인지대 등 소송비용은 본인 부담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상담 ☎ 국번없이 132 대구지부 ☎053-743-1321
6-23. 행정심판 청구시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	대구시 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053-803-2584

2026년 장애인복지서비스 한권으로 알아보기

[기타]

사업명	신청자격(지원대상)	지 원 내 용	비 고
6-24. 통신중계 서비스 손말이음센터	■ 청각 · 언어 장애인	■ 전화 이용이 어려운 청각 또는 언어장애인이 자유롭게 전화를 통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해 주는 실시간 통신중계서비스 지원 ■ 문자중계, 영상중계, 언어장애인용 통신중계 - 각종문의, 쇼핑, 예약, 구직, 회사업무 통화, 가족 및 친구와 연락 등 ■ 콜센터(☎국번없이 107) 및 웹사이트(www.relaycall.or.kr)를 연중무휴, 24시간 365일 운영	콜센터 ☎ 국번없이 107 웹사이트 (www.relaycall.or.kr)
6-25. 장애인정보 통신보조기기 보급	■ 장애인 ■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자	■ 기기 구입비용의 80%를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 추가 지원) - 기기종류 : 독서확대기, 특수마우스, 영상전화기 등 128여종	한국지능정보 사회진흥원 ☎1588-2670
6-26. 사랑의 그린PC 보급	■ 개인 : 기초생활수급자 ■ 단체 :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기관 등 정보 소외계층 지원시설 ※ 기 수혜자는 2년 경과 후 재신청 가능	■ 중고 PC 무상 보급 ■ 신청방법 : 대구시홈페이지(www.daegu.go.kr), 다대구앱, 팩스(053-220-9026)	대구시 지능정보화담당관 ☎053-803-3615
6-27. 에너지바우처	■ 등록장애인 중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 여름(7~9월)에는 전기 요금 차감, 겨울(10월~익년 5월)에는 전기 · 도시가스 · 지역 · 난방 · 등유 · 연탄 · 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를 지급 ■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읍 · 면 · 동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홈페이지 신청
6-28. 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면서, 독거 · 취약 가구 등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 화재 가스사고 등 안전 사각지대 장애인이 응급 상황을 인지하고 119 신고 등 응급 상황 지원	읍 · 면 · 동 신청

7. 일자리 지원



7. 일자리 지원

사업명	신청자격(지원대상)	지 원 내 용	비 고																								
7-1. 장애인 고용서비스	■ 등록장애인	■ 장애인 취업서비스 제공 - 장애인 직업상담과 직업능력평가를 통한 집중 취업 알선 - 취업지원프로그램 등 구직역량 강화지원 - 장애인 직업훈련 실시 및 훈련비 지원 - 재직장애인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 지원인 서비스 지원 ■ 의무고용사업주(상시 50인 이상)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지원 강화* * 정부, 공공기관 : 3.8%, 민간기업 : 3.1% -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체) -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 고용장려금 지원 단가 <table border="1"> <thead> <tr> <th>경증 남성</th><th>경증 여성</th><th>중증 남성</th><th>중증 여성</th></tr> </thead> <tbody> <tr> <td>35만원</td><td>50만원</td><td>70만원</td><td>90만원</td></tr> </tbody> </table>	경증 남성	경증 여성	중증 남성	중증 여성	35만원	50만원	70만원	90만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www.kead.or.kr) ☎1588-1519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지역본부 ☎053-288-1500																
경증 남성	경증 여성	중증 남성	중증 여성																								
35만원	50만원	70만원	90만원																								
7-2. 장애인 일자리지원	■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및 미취업 시각장애인 안마사	■ 사업기간 및 내용, 급여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내용</th><th>근로시간</th><th>급여</th></tr> </thead> <tbody> <tr> <td>장애인 복지 일자리</td><td>공공기관, 복지관 등 배치, 공공업무 수행 (급식·환경 도우미, 안부지킴이 등)</td><td>월 56시간</td><td>월 577천원</td></tr> <tr> <td>일반형 일자리 (전일제)</td><td>공공기관 등에 배치, 행정업무 지원, 복지서비스 지원 등</td><td>주5일 40시간/ (12월 : 37.5시간)</td><td>월 2,156천원</td></tr> <tr> <td>일반형 일자리 (시간제)</td><td></td><td>주5일 20시간/ (12월 : 19시간)</td><td>월 1,048천원</td></tr> <tr> <td>시각 장애인 안마사 파견</td><td>안마사 자격이 있는 시각장애인 참여자가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배치, 안마서비스 제공</td><td>주5일 25시간/ (12월 : 23.5시간)</td><td>월 1,351천원</td></tr> <tr> <td>발달 장애인 요양 보호사 보조</td><td>발달장애인 참여자가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 전문병원 등에 배치, 요양보호사 업무보조</td><td>주5일 25시간/ (12월 : 23.5시간)</td><td>월 1,351천원</td></tr> </tbody> </table>	구분	내용	근로시간	급여	장애인 복지 일자리	공공기관, 복지관 등 배치, 공공업무 수행 (급식·환경 도우미, 안부지킴이 등)	월 56시간	월 577천원	일반형 일자리 (전일제)	공공기관 등에 배치, 행정업무 지원, 복지서비스 지원 등	주5일 40시간/ (12월 : 37.5시간)	월 2,156천원	일반형 일자리 (시간제)		주5일 20시간/ (12월 : 19시간)	월 1,048천원	시각 장애인 안마사 파견	안마사 자격이 있는 시각장애인 참여자가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배치, 안마서비스 제공	주5일 25시간/ (12월 : 23.5시간)	월 1,351천원	발달 장애인 요양 보호사 보조	발달장애인 참여자가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 전문병원 등에 배치, 요양보호사 업무보조	주5일 25시간/ (12월 : 23.5시간)	월 1,351천원	읍·면·동 또는 위탁기관에서 공개모집
구분	내용	근로시간	급여																								
장애인 복지 일자리	공공기관, 복지관 등 배치, 공공업무 수행 (급식·환경 도우미, 안부지킴이 등)	월 56시간	월 577천원																								
일반형 일자리 (전일제)	공공기관 등에 배치, 행정업무 지원, 복지서비스 지원 등	주5일 40시간/ (12월 : 37.5시간)	월 2,156천원																								
일반형 일자리 (시간제)		주5일 20시간/ (12월 : 19시간)	월 1,048천원																								
시각 장애인 안마사 파견	안마사 자격이 있는 시각장애인 참여자가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배치, 안마서비스 제공	주5일 25시간/ (12월 : 23.5시간)	월 1,351천원																								
발달 장애인 요양 보호사 보조	발달장애인 참여자가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 전문병원 등에 배치, 요양보호사 업무보조	주5일 25시간/ (12월 : 23.5시간)	월 1,351천원																								

1 장애인
관련 정보

2 장애인
복지 서비스

3 장애인
복지 서비스

4 장애인
복지 서비스

5 장애인
복지 서비스

6 장애인
복지 서비스

7 장애인
복지 서비스

2026년 장애인복지서비스 한권으로 알아보기

사업명	신청자격(지원대상)	지 원 내 용	비 고
7-3.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및 기관	■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대구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에 의뢰 www.대구판매시설.kr ☎053-984-1116
7-4.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 수행기관 운영	■ 등록장애인	■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 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 대구시 운영기관 : 9개 - 직업재활센터 · 직업평가센터 :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2개소 중복) - 장애인단체(2) : 대구농아인협회, 대구장애인재활협회 - 장애인직업재활시설(4) : 한우리 · 학산 · 자유 · 희망드리보호작업장 - 현장중심직업재활센터(1) : 발달장애인자립지원협회	방문, 전화 등으로 이용신청 대구장애인 종합복지관 ☎053-763-1011 대구농아인협회 ☎053-652-9928 대구장애인재활협회 ☎053-255-8166 한우리보호작업장 ☎053-384-1408 학산보호작업장 ☎053-634-9191 자유보호작업장 ☎053-986-3090 희망드리보호작업장 ☎053-764-1070 발달장애인 자립지원협회 ☎053-766-9888
7-5.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훈련수당)	■ 15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 특수교육 대상자(장애등록 외국인 포함)	■ 직업적응훈련 - 일상생활훈련, 사회적응훈련, 작업환경적응 ■ 직업능력 향상 훈련 및 현장중심직업훈련 ■ 실시기관 - 직업재활센터(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 ■ 훈련수당 - 월 10만원	한국장애인개발원 대구광역시지부 ☎070-5089-4717
7-6.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운영	■ 등록장애인	■ 일반사업장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직업재활훈련 및 보호 고용 실시 ■ 대구시 직업재활시설 : 42개소 - 근로작업장 : 5개소 - 보호작업장 : 37개소	읍 · 면 · 동 또는 해당시설 상담

7. 일자리 지원



사업명	신청자격(지원대상)	지 원 내 용	비 고
7-7.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단,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제외)	■ 지원한도 : 10억원 이내 ■ 지원조건 :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과 지원에 따른 신규장애인 고용의무 모두를 7년간 준수 - 지원금 받은 후 1년 내 모든 조건 인정 - 지원금 용도에 해당하는 실제 투자금액과 공단이 산정한 금액 중 적은금액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 장애인표준사업장 기준 • 최소 장애인 10명 이상 근무, 상시 근로자의 30% 이상 장애인으로 고용상시 근로자의 일정비율 이상 중증장애인으로 고용 • 편의시설을 설치 •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대구지역본부 ☎053-288-1531
7-8. 장애인고용 시설 장비 융자·지원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주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선정기준 - 신청서 접수 후 지사별 (융자)심사위원회 심사 또는 기술위원 검토를 통해 융자지원 사업주 결정 - 장애인고용계획 타당성, 투자계획의 타당성 등 심사	■ 시설장비융자 - 지원용도 : 장애인고용과 관련된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의 설치·구입·수리비용 - 지원한도 : 사업주 당 15억원 이내(장애인 1인당 1억원, 고용의무 인원의 25% 중증고용조건) - 지원조건 :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대출금리(사업주대출금리에서 이차차액보전금리 (5%)제한 금리), 융자금 1억원 당 장애인 1명 (고용의무 인원의 25% 중증장애인 고용) ■ 시설장비지원 - 지원용도 :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차 구입비용 - 지원한도 : 사업주 당 3억원 이내 - 지원조건 : 무상지원금 1천만원(중증장애인 1천 5백만원)당 장애인 1명을 2년간 고용	한국장애인고용공단 (www.kead.or.kr) ☎ 1588-1519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지역본부 ☎ 053-288-1500

1 장애인
관련 정보

2 직업
교육

3 노동·근로
지원

4 의료
및
재활
지원

5 발달
장애
인

6 서
비
스

7 일
자
리
지
원

2026년 장애인복지서비스 한권으로 알아보기

사업명	신청자격(지원대상)	지 원 내 용	비 고						
7-9. 장애인 취업성공 패키지	■ (공통)취업을 희망하는 만 18세 이상 ~ 69세 이하 장애인 - 일반유형: 구직 장애인 - 저소득유형: 중위소득 60% 이하의 구직 장애인 ※ 자세한 사항은 공단으로 직접 문의 후, 참여 여부 최종 결정	■ 장애인에게 성공적인 취업과 직업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단계별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취업지원프로그램 <table><tr><td>1단계</td><td> - 장애인 전문상담(최소2회 이상 실시) - 장애인 심리검사 · 직업평가 - 장애인집단 상담 프로그램 운영 - 개인별 취업 활동계획 수립 </td></tr><tr><td>2단계</td><td> - 장애인전용 직업훈련 -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 내일 배움카드 훈련 연계 등 </td></tr><tr><td>3단계</td><td> - 집중취업알선 및 취업 후 적응 지도 등 </td></tr></table>	1단계	- 장애인 전문상담(최소2회 이상 실시) - 장애인 심리검사 · 직업평가 - 장애인집단 상담 프로그램 운영 - 개인별 취업 활동계획 수립	2단계	- 장애인전용 직업훈련 -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 내일 배움카드 훈련 연계 등	3단계	- 집중취업알선 및 취업 후 적응 지도 등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지역본부 ☎053-288-1500
1단계	- 장애인 전문상담(최소2회 이상 실시) - 장애인 심리검사 · 직업평가 - 장애인집단 상담 프로그램 운영 - 개인별 취업 활동계획 수립								
2단계	- 장애인전용 직업훈련 -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 내일 배움카드 훈련 연계 등								
3단계	- 집중취업알선 및 취업 후 적응 지도 등								
7-10. 발달장애인 직무지도원 파견사업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발달장애인 직무지도원 양성과정(21시간) 이수 필요	■ 배치기관 -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참여형 복지일자리,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 업무내용 - 일자리사업 참여 발달장애인 일상 생활 및 직무지도 - 장애인일자리사업 관련 행정 및 교육 업무지원 ■ 근무조건 - 주 5일(40시간) / 급여 2,157천원 (각종 사회보험가입에 의한 부담금 제외 후 지급)	구 · 군 상담						
7-11. 장애인 취업박람회	■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	■ 취업정보 제공, 구인 및 구직 상담 * 2026 대구장애인취업박람회 예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지역본부 ☎ 053-288-1500						
7-12. 장애인 직업능력 개발원	■ 15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단,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시 만 18세 이상 69세 이하의 등록 장애인)	■ 교육기간 : 1개월 ~ 최대 12개월 ■ 모집시기 : 연중 수시 ■ 교육훈련과정 : 융복합훈련, 특화훈련 ■ 특전 - 교육훈련비용 전액 국비지원(무료) - 훈련수당 및 교통비 지급(해당자에 한함) - 생활관 및 급식 무료 제공 - 훈련기간 중 상해보험 가입 - 취업알선 및 적응지도 - 의료지원과 촉탁의 제도 운영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지역본부 ☎053-288-1500 대구직업능력개발원 ☎053-550-6000						
7-13. 근로지원인 지원	■ 중증장애인근로자 - 업무수행 능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해 부수적인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근로자 ※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 선발	■ 지원시간 : 주 40시간, 1일 최대 8시간 이내 (공단 평가를 통하여 결정) ■ 본인부담금 : 지원받는 시간당 300원 ※ 근로지원인서비스 : 직장생활에서 장애인이 수행하는 직무 중 핵심 업무를 제외한 부수적인 업무를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지역본부 ☎053-288-1533						

7. 일자리 지원



사업명	신청자격(지원대상)	지 원 내 용	비 고
7-14. 보조공학 기기 지원	■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 ■ 지원신청 당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거나 4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사업주 ■ 장애인근로자	■ 지원 내용 - 장애인 1인당 1,500만원(중증 2,000만원) 한도 지원 *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에 따라 추가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의 경우 포함 * 지원한도액은 보조공학기기 구입·대여에 소요되는 비용,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액을 전부 합산하여 고용유지기간(2년) 동안에는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 금액은 본인 부담가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지역본부 ☎053-288-1591
7-15.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 제작 지원	■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기업)	■ 제품디자인(디자인개발, 디자인묵업), 제품설계 및 시제품제작(기구설계, 워킹묵업 등), 시제품금형 제작비용 최대 3천만원 한도 내 지원(지원유형별 최대 지원금 상이) * 자부담 이외에 추가 제작비용 및 사후 환급이 가능한 부가가치세 및 관세는 선정기업 부담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02-2181-6535
7-16. 기술인증 및 마케팅지원	■ 장애인기업확인서를 보유한 장애인기업	■ 우수기술 사업화 위한 인증획득 비용 및 마케팅 비용 지원 - 인증·마케팅 지원분야별 최대 2개 유형, 기업별 15백만원 한도 내 지원 - 공공금액 기준 중기업 70%, 소기업 80% 이내 지원 가능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02-2181-6537
7-17.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	■ 장애인 예비 창업자 ■ 장애인 재기 창업자 (업종전환 희망자) ■ 3년 미만 초기 창업자	■ 장애인 창업점포 임대보증금을 5년 기간이내, 1억 3천만원 한도에서 대여 ■ 창업점포는 센터 명의로 전세권설정이 가능한 점포에 한함 ■ 부동산중개수수료, 권리금, 관리비, 월세, 인테리어비 등은 본인부담 ■ 감정평가 결과, 지원보증금을 합산한 입주목적물의 잔존평가액이 부동산가액의 20% 범위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 ■ 점포의 소유권자와 특수 관계인 경우 지원 제한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02-2181-6536 ☎02-2181-6527
7-18. 장애인 창업 사업화 지원	■ 장애인 예비 창업자 ■ 장애인 재기 창업자 (업종전환 희망자)	■ 초기창업에 필요한 자금(1천만원/2천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사업화 기반 조성 ■ 지원금은 최종 평가점수 순위를 기준으로 예산 및 선정 규모를 고려해 차등 배정 ■ 지원금과 자부담금을 합산하여 자금 집행 - 지원금 2천만원(자부담 640만원 별도) - 지원금 1천만원(자부담 320만원 별도) ■ 자금은 점포 인테리어, 리모델링, 브랜드 개발, 마케팅, 홈페이지 제작, 집기 구매 등의 목적으로 사용 가능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02-2181-6534

1 장애인
고용
지원

2 직업
능력
개발
지원

3 교육·
훈련
지원

4 재
활
촉
진
및
지
원

5 자
립
생
존
지
원

6 서
비
스

7 일
자
리
지
원

2026년 장애인복지서비스 한권으로 알아보기

사업명	신청자격(지원대상)	지 원 내 용	비 고
7-19. 창업보육실 운영	■ 장애인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미만의 장애인기업	■ 창업 공간(사무공간, IT인프라 제공 등), 정책정보 제공 등 경영활동 지원 - 공익변리사 상담서비스(지식재산권 등) - 정부지원사업 정보제공 - 전국 123개실, 각 지역별 상이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02-2181-6500
7-20.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 2026년 개최되는 국내·외 전시회에 개별 참가 예정인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기업)	■ 국내 :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활동보조인력비 합산금액의 80%, 3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 해외 :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통·번역비, 운송료, 활동보조인력비 합산금액의 80%, 5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02-2181-6532
7-21. 1인 사업주 업무지원인 서비스	■ 상시근로자가 없는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 (장애인기업 확인서 유효기업)	■ 직무를 보조하는 업무지원인 파견지원 - 월별 인건비 공급가액 95% 지원 - 월별 인건비 5% 및 부가세 자부담 ■ 직무 관련 전문업체(전문가) 용역 수행 비용 공급가액 95% 지원 - 의사소통형: 수어통역, 점역교정 등 - 경영지도형: 홍보컨설팅, 공공조달 등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02-2181-6531 ☎02-2181-6529
7-22. 1인 사업자 보조공학기기 지원	■ 상시근로자가 없는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 (장애인기업 확인서 유효기업)	■ 보조공학기기 구매금액 공급가액 90%,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휠체어, 점자정보단말기, 확대기 등 - 업무지원인 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02-2181-6529
7-23. 발달장애인 가족창업 특화사업	■ 발달장애인 가족 공동 예비창업자 - 안동, 광주, 공주, 제주, 진주, 아산, 익산	■ 기초 및 기술교육, 보육실 입주 등 장애인 예비창업자 창업을 위한 지원 - 기초, 기술교육, 멘토링 지원 - 사무, 제조 등 인프라 지원 - 사업화, 판로지원 등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02-2181-6500



8.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8.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사업명	신청자격(지원대상)	지 원 내 용	비 고														
8-1.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	■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소득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초과 100%이내 -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미소금융재단의 자금 대여상품을 이용(자영업자 관련 대출자금, 장애인 자립자금 대출자금) ■ 대여목적 : 생업자금,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취업기술훈련비, 장애인보조기기구입비, 자기개발훈련비, 의료비 등 ※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용자 불가	■ 대여한도 -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내 (단, 자동차 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설비 부착시 1,500만원 이내) ※ 요건 : ① 기존대출금 2,000만원 이하, ②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600만원 이상 - 담보대출 : 5,000만원 이하 ■ 대여이자 : 고정금리 연 2% ■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금융기관(국민은행)	읍·면·동 신청														
8-2. 탈시설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장애인으로 거주시설 및 자립생활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 된 만 18세 이상 장애인 - 결혼, 취업 등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 시 주거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 지원 등	■ 1인당 1천만원(1회 한함) - 퇴소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제외대상 : 실비이용 입소자, 연고자에게 인도된 자, 공동생활가정 입소자,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입주자, 이미 퇴소 정착금을 받은 자	전입지 구·군 신청														
8-3. 장애인 자립생활 (IL)센터 운영	■ 모든 유형의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우선)	■ 사업내용 - 기본사업 : 권익옹호지원, 동료상담, 개인별 자립지원, 거주시설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 선택사업 : 지역사회서비스 지원 ※ 자립생활센터 현황 <table><tr><th>지역</th><th>센터명</th></tr><tr><td>중구</td><td>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053-295-4240</td></tr><tr><td>동구</td><td>한사랑발달장애인자립생활센터 ☎053-943-0445 다릿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 ☎053-751-9460</td></tr><tr><td>서구</td><td>맥장애인자립생활센터 ☎053-562-1213</td></tr><tr><td>남구</td><td>밝은내일IL종합지원센터 ☎053-656-3383</td></tr><tr><td>달서구</td><td>달구별장애인자립생활센터 ☎053-633-8001</td></tr><tr><td>달성군</td><td>다사장애인자립생활센터 ☎053-585-1577</td></tr></table>	지역	센터명	중구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053-295-4240	동구	한사랑발달장애인자립생활센터 ☎053-943-0445 다릿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 ☎053-751-9460	서구	맥장애인자립생활센터 ☎053-562-1213	남구	밝은내일IL종합지원센터 ☎053-656-3383	달서구	달구별장애인자립생활센터 ☎053-633-8001	달성군	다사장애인자립생활센터 ☎053-585-1577	가까운 자립생활센터로 문의
지역	센터명																
중구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053-295-4240																
동구	한사랑발달장애인자립생활센터 ☎053-943-0445 다릿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 ☎053-751-9460																
서구	맥장애인자립생활센터 ☎053-562-1213																
남구	밝은내일IL종합지원센터 ☎053-656-3383																
달서구	달구별장애인자립생활센터 ☎053-633-8001																
달성군	다사장애인자립생활센터 ☎053-585-1577																

8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9 장애인·가족 지원

10 세제 혜택

11 지역사회복지사업 (재활시설) 및 기타

12 장애인복지위원회

13 KKO(장애인생산품) 인증제도 안내

2026년 장애인복지서비스 한권으로 알아보기

사업명	신청자격(지원대상)	지 원 내 용	비 고																
8-4. 장애인자립 생활주택 (체험형) 운영	■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퇴소) 또는 재가 장애인 등	■ 입주기간 : 1주 ~ 2년 이내 ■ 입주인원 : 가구당 2~4명 / 단독 및 공동주택(1인 1실 원칙) ■ 사업내용 : 자립생활 준비 위한 기술교육, 역량강화, 동료상담 등 ※ 운영기관 현황 <table><tr><th>지역</th><th>센터명</th></tr><tr><td>중구</td><td>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053-295-4240</td></tr><tr><td>동구</td><td>장애인지역공동체 ☎053-290-9560 사회복지법인한사랑 ☎053-943-0448</td></tr><tr><td>남구</td><td>밝은내일IL종합지원센터 ☎053-656-3383</td></tr><tr><td>수성구</td><td>함께하는 장애인부모회 ☎053-751-6902</td></tr><tr><td>달서구</td><td>달구벌장애인자립생활센터 ☎053-633-8001</td></tr></table>	지역	센터명	중구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053-295-4240	동구	장애인지역공동체 ☎053-290-9560 사회복지법인한사랑 ☎053-943-0448	남구	밝은내일IL종합지원센터 ☎053-656-3383	수성구	함께하는 장애인부모회 ☎053-751-6902	달서구	달구벌장애인자립생활센터 ☎053-633-8001	가까운 자립생활주택 운영기관으로 문의				
지역	센터명																		
중구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053-295-4240																		
동구	장애인지역공동체 ☎053-290-9560 사회복지법인한사랑 ☎053-943-0448																		
남구	밝은내일IL종합지원센터 ☎053-656-3383																		
수성구	함께하는 장애인부모회 ☎053-751-6902																		
달서구	달구벌장애인자립생활센터 ☎053-633-8001																		
8-5. 장애인자립 생활주택 (정착형) 운영	■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퇴소) 또는 재가 장애인 등	■ 입주기간 : 2년(2회 연장 가능) ■ 입주인원 : 가구당 2~3명(1인 1실 원칙) ■ 사업내용 : 지역사회 가정과 비슷한 환경의 주거공간 및 연계서비스 제공 ※ 운영기관 현황 <table><tr><th>지역</th><th>센터명</th></tr><tr><td>중구</td><td>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053-295-4240</td></tr><tr><td>동구</td><td>장애인지역공동체 ☎053-290-9560 사회복지법인 한사랑 ☎053-943-0448</td></tr><tr><td>서구</td><td>대구장애인인권연대 ☎053-562-1213</td></tr><tr><td>남구</td><td>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053-210-5600 밝은내일IL종합지원센터 ☎053-656-3383</td></tr><tr><td>북구</td><td>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053-210-5600</td></tr><tr><td>달서구</td><td>달구벌장애인자립생활센터 ☎053-633-8001 대구여성장애인연대 ☎053-637-6058</td></tr><tr><td>달성군</td><td>다사장애인자립생활센터 ☎053-585-1577</td></tr></table>	지역	센터명	중구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053-295-4240	동구	장애인지역공동체 ☎053-290-9560 사회복지법인 한사랑 ☎053-943-0448	서구	대구장애인인권연대 ☎053-562-1213	남구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053-210-5600 밝은내일IL종합지원센터 ☎053-656-3383	북구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053-210-5600	달서구	달구벌장애인자립생활센터 ☎053-633-8001 대구여성장애인연대 ☎053-637-6058	달성군	다사장애인자립생활센터 ☎053-585-1577	가까운 자립생활주택 운영기관으로 문의
지역	센터명																		
중구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053-295-4240																		
동구	장애인지역공동체 ☎053-290-9560 사회복지법인 한사랑 ☎053-943-0448																		
서구	대구장애인인권연대 ☎053-562-1213																		
남구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053-210-5600 밝은내일IL종합지원센터 ☎053-656-3383																		
북구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053-210-5600																		
달서구	달구벌장애인자립생활센터 ☎053-633-8001 대구여성장애인연대 ☎053-637-6058																		
달성군	다사장애인자립생활센터 ☎053-585-1577																		
8-6. 탈시설 장애인 시비 추가 지원	■ 최근 3년 이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퇴소한 활동지원수급자 ※ 단기보호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제외	■ 월지원액 : 691,000원(40시간) 지원	읍·면·동 신청																

9. 공공요금 등 할인·감면



9. 공공요금 등 할인·감면

사업명	신청자격(지원대상)	지 원 내 용	비 고
9-1. 차량 구입시 도시 철도채권 구입 면제	■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중 1대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15인승이하 소형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것으로 총중량 3.5톤 이하 소형화물자동차 - 총중량 3.5톤 이하 소형특수자동차	■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대구시 차량등록사업소 ☎053-749-1112
9-2. 고궁, 능원,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국·공립공연장, 공공 체육시설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 국·공립 공연장 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 입장요금 무료 ※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 공공체육시설 : 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등 ※ 실비 차원의 시설 이용료 등은 자체규정에 따라 감면 가능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9-3.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 2시간 이내 주차요금 면제(1일 1회) ■ 2시간 초과시 초과요금 50% 할인 ※ 소재지 구청의 개별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9-4. 철도· 도시철도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KTX, 새마을호 : 30% 할인(토·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 : 100%(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8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9 장애인
합의·견해

10 세
제혜택

11 (재활시설)및
기타

12 장애인
복지사업

13 KTX(장애인)
승차권
아동·장애인
매출금
내

2026년 장애인복지서비스 한권으로 알아보기

사업명	신청자격(지원대상)	지 원 내 용	비 고
9-5. 유선통신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 시내전화:월 통화료 50% 감면 ■ 시외전화:월 통화료 50% 감면 (월 3만원 한도) ■ 인터넷전화:월 통화료 50% 감면 * 이동전화에 거는 요금 : 월 1만원 사용한도 이내에서 30% 감면 ■ 114 안내요금 면제 ※ 자동 연결은 요금 부과 ■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 단체의 경우 2회선 감면 (청각장애인 단체 등은 FAX용 1회선 추가 제공),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중복 감면 없음	해당 통신회사 또는 읍·면·동 신청
9-6. 이동통신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차상위 계층으로 지정된 자	■ 가입비 면제 ■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함) 35% 할인 ※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인 한도 감면 ※ 단, 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MVNO, 알뜰폰)는 미감면	해당 통신회사 또는 읍·면·동 신청
9-7. 시·청각 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세대주 불문) ■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 TV수신료 전액 면제 ※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TV에 한함	읍·면·동 또는 관할 한전사업소, KBS 고객센터 ☎1588-1801
9-8. 시·청각 장애인용 TV 보급	■ 시·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처 눈·귀 상이등급자 - 연령, 소득수준 등 우선순위에 따라 보급	■ 장애인방송(폐쇄자막방송, 한국수어방송, 화면해설방송) 편의기능이 포함된 시각·청각장애인용TV(방송수신기) 제작 및 보급	시청자미디어재단 ☎1688-4596
9-9. 장애인방송 시청 지원	■ 시·청각장애인 - 자막방송 - 화면해설방송 - 수어방송	■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방송 (자막, 수어, 화면해설방송) 지원 - 방송사업자(지상파, SO, PP, 종편, 위성 등)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 EBS 장애인교육방송물 보급 - 시·청각장애 학생을 위해 EBS 교육 방송물을 자막·화면해설방송으로 재제작하여 웹 지원 (http://free.ebs.co.kr)	시청자미디어재단 ☎1688-4596
	■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용 방송프로그램)	■ 발달장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 제작된 영상물을 '알기 쉬운 자막·음성해설방송'으로 재제작하여 보급	

9. 공공요금 등 할인·감면



사업명	신청자격(지원대상)	지 원 내 용	비 고															
9-10.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 등록장애인	■ 연안여객선 중증장애인 여객운임 50% 할인 ※ 선사별, 개별 운송약관에 의해 구체적 할인율이 상이할 수 있음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한국해운조합 ☎02-6096-2044															
9-11. 항공요금 할인	■ 등록장애인 ※ 항공요금 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항공사에서 자율적으로 할인을 실시하는 제도임																	
	■ 대한항공(문의처 : 1588-2001)																	
	<table><tr><th>조건</th><th>운임 할인율</th><th>증빙서류</th></tr><tr><td>▶ 1~4급 장애인 ▶ 1~3급 장애인의 동반보호자 1인 ▶ 장애 정도가 심한장애인(중증) 및 동반 보호자 1명</td><td>50%</td><td rowspan="2">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td></tr><tr><td>▶ 5~6급 장애인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td><td>30%</td></tr></table>			조건	운임 할인율	증빙서류	▶ 1~4급 장애인 ▶ 1~3급 장애인의 동반보호자 1인 ▶ 장애 정도가 심한장애인(중증) 및 동반 보호자 1명	50%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 5~6급 장애인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30%							
	조건	운임 할인율	증빙서류															
	▶ 1~4급 장애인 ▶ 1~3급 장애인의 동반보호자 1인 ▶ 장애 정도가 심한장애인(중증) 및 동반 보호자 1명	50%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 5~6급 장애인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30%																
	■ 아시아나 항공(문의처 : 1588-8000)																	
	<table><tr><th>대상</th><th>조건</th><th>운임할인율</th><th>증빙서류</th></tr><tr><td rowspan="2">장애인 (성인/소아/유아)</td><td>중증(혹은 1~3급) 복지카드 소지자</td><td>50%</td><td rowspan="2">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td></tr><tr><td>경증(혹은 4~6급) 복지카드 소지자</td><td>30%</td></tr><tr><td>장애인동반자</td><td>중증(혹은 1~3급) 승객과 동반하는 보호자 1인</td><td>50%</td><td>※ 공항 이용료 50% 할인</td></tr></table>			대상	조건	운임할인율	증빙서류	장애인 (성인/소아/유아)	중증(혹은 1~3급) 복지카드 소지자	50%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경증(혹은 4~6급) 복지카드 소지자	30%	장애인동반자	중증(혹은 1~3급) 승객과 동반하는 보호자 1인	50%	※ 공항 이용료 50% 할인	
	대상	조건	운임할인율	증빙서류														
	장애인 (성인/소아/유아)	중증(혹은 1~3급) 복지카드 소지자	50%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경증(혹은 4~6급) 복지카드 소지자		30%																
장애인동반자	중증(혹은 1~3급) 승객과 동반하는 보호자 1인	50%	※ 공항 이용료 50% 할인															
■ 에어부산(문의처 : 1666-3060)																		
<table><tr><th>대상</th><th>조건</th><th>운임할인율</th><th>증빙서류</th></tr><tr><td rowspan="2">장애인</td><td>▶ 1~4급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 1~3급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의 동반보호자</td><td>30%</td><td rowspan="3">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td></tr><tr><td>▶ 5~6급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td><td>10%</td></tr><tr><td rowspan="2">소아장애인</td><td>▶ 1~4급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td><td>50%</td><td rowspan="2">30%</td></tr><tr><td>▶ 5~6급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 1~3급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의 동반보호자 (단, 운임 미부와 손님의 동반보호자는 할인 불가)</td><td></td></tr></table>			대상	조건	운임할인율	증빙서류	장애인	▶ 1~4급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 1~3급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의 동반보호자	30%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 5~6급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10%	소아장애인	▶ 1~4급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50%	30%	▶ 5~6급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 1~3급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의 동반보호자 (단, 운임 미부와 손님의 동반보호자는 할인 불가)	
대상	조건	운임할인율	증빙서류															
장애인	▶ 1~4급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 1~3급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의 동반보호자	30%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 5~6급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10%																
소아장애인	▶ 1~4급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50%		30%														
	▶ 5~6급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 1~3급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의 동반보호자 (단, 운임 미부와 손님의 동반보호자는 할인 불가)																	
■ 진에어(문의처 : 1600-6200)																		
<table><tr><th>대상</th><th>운임할인율</th><th>공항세 할인율</th><th>증빙서류</th></tr><tr><td>1~4급 또는 중증 장애인 본인</td><td rowspan="2">40%</td><td rowspan="3">50%</td><td rowspan="3">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td></tr><tr><td>1~3급 또는 중증 장애인의 동반보호자 1명</td></tr><tr><td>5~6급 또는 경증 장애인 본인</td><td>할인없음</td></tr></table>			대상	운임할인율	공항세 할인율	증빙서류	1~4급 또는 중증 장애인 본인	40%	50%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1~3급 또는 중증 장애인의 동반보호자 1명	5~6급 또는 경증 장애인 본인	할인없음					
대상	운임할인율	공항세 할인율	증빙서류															
1~4급 또는 중증 장애인 본인	40%	50%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1~3급 또는 중증 장애인의 동반보호자 1명																		
5~6급 또는 경증 장애인 본인	할인없음																	

8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9 장애인·고령자
할인·감면

10 세제 혜택

11 지역사회복지사업
(재활시설) 및 기타

12 장애인복지사업

13 장애인·고령자
할인·감면

2026년 장애인복지서비스 한권으로 알아보기

사업명	신청자격(지원대상)	지 원 내 용		비 고										
9-11. 항공요금 할인	■ 제주항공(문의처 : 1599-1500)													
	<table><tr><th>조건</th><th>운임 할인율</th><th>증빙서류</th></tr><tr><td>▶ 1~4급 장애인 ▶ 1~3급 장애인의 동반 보호자 1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의 동반보호자 1인</td><td>40%</td><td>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td></tr></table>		조건	운임 할인율	증빙서류	▶ 1~4급 장애인 ▶ 1~3급 장애인의 동반 보호자 1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의 동반보호자 1인	40%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조건	운임 할인율	증빙서류											
	▶ 1~4급 장애인 ▶ 1~3급 장애인의 동반 보호자 1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의 동반보호자 1인	40%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 티웨이항공(문의처 : 1688-8686)														
<table><tr><th>대상</th><th>운임 할인율</th><th>공항세 할인율</th><th>증빙서류</th></tr><tr><td>▶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기준1~3급)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기준1~3급)의 동반보호자 1명 ※ 동반보호자의 경우, 운임 미부과 대상에 대한 보호자 할인 불가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소아 장애인 (중증, 기준1~3급)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경증, 기준4~6급)</td><td>50%</td><td>50%</td><td rowspan="2">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td></tr><tr><td>▶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경증, 기준4~6급)</td><td>할인 없음</td><td></td></tr></table>		대상	운임 할인율	공항세 할인율	증빙서류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기준1~3급)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기준1~3급)의 동반보호자 1명 ※ 동반보호자의 경우, 운임 미부과 대상에 대한 보호자 할인 불가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소아 장애인 (중증, 기준1~3급)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경증, 기준4~6급)	50%	50%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경증, 기준4~6급)	할인 없음			
대상	운임 할인율	공항세 할인율	증빙서류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기준1~3급)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기준1~3급)의 동반보호자 1명 ※ 동반보호자의 경우, 운임 미부과 대상에 대한 보호자 할인 불가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소아 장애인 (중증, 기준1~3급)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경증, 기준4~6급)	50%	50%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경증, 기준4~6급)	할인 없음													
※ 모든 항공사 할인은 항공사 정상운임 기준 할인이며, 이중 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적용대상 중 장애등급으로 구분되는 경우는 '19.7월 이전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발급자에 한함														
9-12.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직계비속의 배우자 · 형제 · 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배기량제한 없음) -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차 - 최대적재량 1톤이하 화물자동차 ※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일반차로) 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 또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 (하이패스 차로) 출발전 하이패스 감면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 ※ 지문인식기내 지문인증시 유효기간은 4시간이며 초과 또는 전원 재부팅시 재인증 필요 ※ 장애인복지카드와 고속도로통행료 할인기능을 통합한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발급('14.12월부터)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발급 신청 : 읍 · 면 · 동 감면단말기 지문정보 입력 : 읍 · 면 · 동,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 ☎1588-2504									

9. 공공요금 등 할인·감면



사업명	신청자격(지원대상)	지 원 내 용	비 고
9-13. 전기요금 할인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주택용 및 일반용(숙박시설, 고시원 등) 신청 가능 - 월 정액 1만6천원 한도 ※ 여름철(6~8월) 2만원 한도	읍·면·동 또는 한전 ☎123 www.kepco.co.kr
9-14. 도시가스 요금 할인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신청 가능 - 경감금액 • (취사난방용) 동절기(12~3월) 72,000원/월 동절기 제외(4~11월) 9,900/월 • (취사용) 1,680원/월 ※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자의 월 도시가스 사용요금이 경감금액 보다 작은 경우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 만큼만 경감	읍·면·동 또는 (주)대성에너지 ☎053-606-1000 www.citygas.or.kr
9-15. 장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발급된 자동차	■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의 50~30%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50%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30% ■ 장소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 일반검사소가 아님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문의 www.kotsa.or.kr ☎1577-0990

※ 지원내용 중 일부 변경 사항 있을 수 있음

※ 공공요금(전기요금, 이동통신요금, TV수신료, 도시가스요금) 감면·할인 서비스 신청시 읍·면·동에서 행복e음을 통하여 One-Stop 처리

8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9 장애인·고령자
할인·감면

10 세제 혜택

11 지정사회복지사업
(재활시설) 및 기타

12 장애인복지주택

13 KKO(장애인생산품
아파트)매매도안내

2026년 장애인복지서비스 한권으로 알아보기

10. 세제혜택

사업명	신청자격(지원대상)	지 원 내 용	비 고
10-1.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그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승용자동차 1대 ※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잔존년도분 부과	■ 개별소비세 500만원 한도로 면제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 한도) ※ 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	자동차 판매인에게 상담 또는 국세청 고객센터 ☎ 126 www.nts.go.kr
10-2.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지방세 감면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19.6.30 이전 등록된 시각장애4급 포함)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장애인이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차량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 ①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③ 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④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⑤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자동차	■ 취득세(중전 등록세 포함) 및 자동차세 면제	구·군 세무과에 신청 (차량 등록 시에는 차량등록사업소에 신청)
10-3. 소득세 공제	■ 등록장애인	■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공제 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소득세법 제50조) ■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소득세법 제51조)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신고 시 공제신청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26)
10-4. 상속세 상속 공제	■ 등록장애인 - 국가유공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포함	■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등록장애인에게 상속 공제	관할 세무서 신청
10-5. 장애인 의료비 공제	■ 등록장애인	■ 당해연도 의료비 - 의료비 지출액 전액의 15% 공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신고 시 공제신청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26)

10. 세제혜택



사업명	신청자격(지원대상)	지 원 내 용	비 고
10-6.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 등록장애인	■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의 15% 공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신고 시 공제신청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26)
10-7. 장애인 보험료 공제	■ 등록장애인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 공제 - 연 100만원 한도, 15% 공제율 적용	
10-8.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 등록장애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에 해당하는자	■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해 그 이익을 지급받은 경우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 미포함 ※ 증여세 부과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부과 • 신탁이 해지 또는 만료된 경우, 다만, 해지일 또는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한 경우 제외 • 신탁기간 중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 •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청
10-9.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등록장애인	■ 장애인보장구(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감면	별도신청 없음
10-10.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 등록장애인	■ 장애인용 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 · 시각 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면제	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시에 관세면제 신청
10-11. 특허출원료 /기술평가 청구료 등의 감면	■ 등록장애인	■ 특허 출원 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차 등록료, 기술평가 청구료 면제 ■ 특허 · 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 시 그 심판 청구료의 70% 할인	출원, 심사청구, 기술평가청구, 심판청구시 또는 등록 시 특허청에 감면 신청

8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10 세제혜택

11 지역사회복지사업
(재활시설) 및 기타

12 장애인복지주택

1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2026년 장애인복지서비스 한권으로 알아보기

11. 지역사회 복지사업(재활시설) 및 기타

사업명	신청자격(지원대상)	지 원 내 용	비 고
11-1. 장애인 주간이용 시설 운영	■ 등록장애인	■ 재가장애인 낮동안 보호	근거리 주간이용시설 방문 이용(구·군 문의)
11-2. 장애인 복지관 운영	■ 등록장애인 및 가족	■ 장애인에 대한 상담, 의료재활, 직업 재활, 사회생활 적응지도, 사회교육 등 ※ 장애인복지관 : 6개소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053-763-1011 달구벌종합복지관 ☎053-527-0223 시각장애인복지관 ☎053-526-9988 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 ☎053-527-0350 상록뇌성마비복지관 ☎053-382-0961 달성군장애인복지관 ☎053-616-0260
11-3. 장애인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	■ 등록장애인	■ 재가장애인을 방문, 상담, 의료·교육 재활, 직업재활 등의 서비스 제공 - 가사서비스, 정서서비스, 결연 및 후원사업, 기타 등	더불어복지재단 ☎053-651-4867
11-4. 장애인 체육시설 운영	■ 등록장애인 등	■ 장애인의 체력증진 및 신체기능회복 활동 지원 ■ 이용료는 재가장애인, 시설장애인, 지역주민으로 이용자를 구분 시설별 산정이용료 부담	달구벌재활스포츠센터 ☎053-523-2112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체육관 ☎053-763-1011
11-5. 수어통역 센터 운영	■ 청각·언어장애인	■ 출장수어통역 - 관공서·법률관련 기관 방문, 의료기관 진료 등의 경우에 수화통역 필요시 출장통역 실시 ■ 일반인에 대한 수어교육 ■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고충 상담	대구수어통역센터 지역지원본부 ☎053-623-9929 동구수어통역센터 ☎053-939-2365 북구수어통역센터 ☎053-324-0852 수성구수어통역센터 ☎053-753-0654 달서구수어통역센터 ☎053-633-6902 달성군수어통역센터 ☎053-267-7200 군위군수어통역센터 ☎054-383-0075

11. 지역사회 복지사업(재활시설) 및 기타



사업명	신청자격(지원대상)	지 원 내 용	비 고
11-6. 시각장애인 등 생활지원 센터	■ 등록 시각장애인	■ 사업 내용 - 직장 출 · 퇴근, 병원, 나들이 등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 이용요금 : 실비 ■ 사업 주체 : 대구시각장애인연합회	대구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053-253-2655 군위군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054-382-8711
11-7. 장애인 재활지원 센터 운영	■ 등록장애인 및 가족, 관련 전문가	■ 장애인과 가족지원 - 정보격차해소지원사업 : 정보제공 및 상담, 장애인 IT대회 - 인권교육지원사업 - 생활 · 문화지원사업 : 정서적, 사회적, 경제적 자원 제공 ■ 전문가와 지역사회지원 - 전문가와 종사자 교육지원사업 : 전문인력을 활용한 학술연구활동 지원 - 지역사회통합지원사업 : 장애 이해와 예방, 인식개선 활동	대구장애인재활협회 ☎053-255-8166
11-8. 지적장애인 자립지원 센터 운영	■ 등록 지적장애인과 가족	■ 지적장애인에 대한 상담지원 ■ 지적장애인의 자기권리주장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지원 ■ 지적장애인 부모 및 종사자 교육 ■ 지적장애인 자립지원 프로그램 개발 · 보급 등	대구지적발달장애인 복지협회 ☎053-428-2173
11-9. 장애인 재활 (교육 · 복지) 센터 운영	■ 등록장애인 ※ 소재지 구청의 개별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재활운동, 취미교실, 작업장, 요가, 재활치료, 취업훈련, 주간보호, 심리상담, 인터넷활용, 컴퓨터교육 등 ※ 센터별로 운영프로그램이 다를 수 있음	동구장애인재활센터 ☎053-745-5266 서구장애인재활교육센터 ☎053-573-4653 남구장애인재활지원센터 ☎053-471-0606 수성장애인재활센터 ☎053-759-0770 월배장애인재활복지센터 ☎053-639-0321 성서장애인재활복지센터 ☎053-586-8890
11-10. 점자도서관 운영	■ 시각장애인	■ 주요 기능 - 도서 대출사업 : 점자도서 및 녹음도서 대출 - 점자 및 녹음도서 발간 - 점자 및 정보 보조기기 교육 · 상담	대구점자도서관 ☎053-256-8877

8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9 장애인·가족
지원

10 세제 혜택

11 지역사회복지사업
(재활시설) 및 기타

12 장애인복지사업

13 장애인생산물
유선구매제도 안내

2026년 장애인복지서비스 한권으로 알아보기

사업명	신청자격(지원대상)	지 원 내 용	비 고
11-11. 편의시설설치 시민촉진단 운영	■ 대구지체장애인협회	■ 주요업무 기능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계도 - 편의시설 설치 홍보 및 안내 - 편의시설 실태조사 지원	대구시 편의시설설치 시민촉진단 ☎053-954-0170
11-12.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 센터 운영	■ 대구지체장애인협회(구·군 지회 포함)	■ 주요업무 기능 - 편의시설 설치 관련 자문·기술적 지원 -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참여 -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 설치 및 이용방법 홍보 등	대구 편의센터 ☎053-944-0370 중구 편의센터 ☎053-255-2096 동구 편의센터 ☎053-745-5266 서구 편의센터 ☎053-573-4653 남구 편의센터 ☎053-471-0606 북구 편의센터 ☎053-953-1694 수성구 편의센터 ☎053-759-0770 달서구 편의센터 ☎053-639-0321 달성군 편의센터 ☎053-615-0090 군위군 편의센터 ☎054-382-9928
11-13. 장애인 목욕탕 운영	■ 등록장애인 및 가족, 비장애인	■ 운영방법 : 주2회(매주 화·수요일) - 09:00~18:00(혹서기 2개월 제외) - 이용요금 : 대상자별 1,500~3,000원 • 어린이 1,500원(미취학 무료) • 장애인 및 그 보호자 2,000원 • 비장애인 3,000원	달구벌종합복지관 ☎053-527-0223
11-14. 재가장애인 이동목욕 지원	■ 달서구거주 거동불편 중증장애인	■ 달서구자원봉사센터 - 세대방문 목욕서비스 제공 : 매주 월~금(10:00~17:00) 운영 - 단체 목욕서비스 : 월1회 (매월 둘째 수요일), 달구벌종합복지관 ※ 모범운전자회 차량으로 이동지원	달서구자원봉사센터 ☎053-636-1365
11-15. 대구광역시 장애인대상 시상	■ 추천대상 : 대구시에 3년 이상 계속 거주(소재)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 ■ 추천권자 : 구청장·군수, 비영리법인·단체 대표, 시민 20명 이상 연명 ※ 대구시의 후보자 추천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추천 제한	■ 장애인으로서 타인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등 사회의 귀감이 되는 사람(1명) ■ 장애인을 위하여 헌신하거나 봉사하여 사회의 귀감이 되는 단체(1개) 또는 개인(1명) ※ 현지 확인 및 심사·선정 후 매년 대구시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시 시상	대구시 장애인복지과 ☎053-803-3282

12. 장애인 권익옹호



12. 장애인 권익옹호

사업명	신청자격(지원대상)	지 원 내 용	비 고
12-1. 장애인권익 옹호기관 운영	■ 학대피해 장애인 및 장애인의 가족, 가해자 ■ 신고의무자인 사회복지 종사자, 전담공무원, 의료인 등	■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관련 ■ 신고방법 - 평일(09:00~18:00) 국번없이 1644-8295 그 외 시간 112, 방문 및 우편 등 ■ 처리절차 : 신고 → 접수 → 현장조사 (응급조치) → 회복지원 → 사후모니터링	장애인학대신고 국번없이 ☎1644-8295 ※ 운영기관 : (사)대구장애인 권익문제연구소 (☎053-716-8295)
12-2. 여성장애인 통합상담소 운영	■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여성폭력 피해 장애인	■ 피해 신고 접수 및 상담 ■ 피해자 및 피해자 동반 가정구성원 임시보호 및 의료·보호시설로의 인도 ■ 수사기관 조사, 법원 증인신문 등 동행 및 법률 자문에 필요한 협조·지원 ■ 그 외 피해자 등 보호 관련 지원	여성긴급전화 국번없이 ☎1366 ※ 운영기관 : 대구여성장애인 통합상담소 (☎053-637-6057)



8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9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10 세계
제해책

11 지역
사회복지
사업

12 장애인
권익옹호

13 장애인
권익옹호
사업

13. 중증장애인생산물품 우선구매제도 안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생산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만든 중증장애인생산물품을 의무적으로 우선 구매하여야 합니다.

- 근거 : 「중증장애인생산물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 내용 :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과 용역 총구매액의 1.1%이상 중증장애인생산물품으로 우선구매

▶ 대구 소재 중증장애인생산물품 생산시설 지정현황

연번	시 설 명	연 락 처	주요 생산물품	소재지
1	자유보호작업장	053-986-3090	비누, 화장지류	동구
2	만승자립원	053-986-3080	꿀, 사무용지류, 재생토너카트리지	동구
3	달성군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053-615-0506	PE봉투, 공예품, 비누, 소프트웨어개발, 판촉물인쇄, 화훼류	달성군
4	성보호작업장	053-941-8329	현수막	북구
5	행복의 일터	053-554-2046	제과제빵	중구
6	한창	053-654-5214	인쇄물, 판촉물인쇄	달성군
7	해성보호작업장	053-761-0812	현수막	수성구
8	대구드림텍	053-583-1252	조명기구, 제어장치, 문서파쇄, 배전반	달서구
9	학산보호작업장	053-634-9191	물티슈, 카페	달성군
10	제일장애인보호작업장	053-752-9392	소독방역	동구
11	숲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053-795-9777	제과제빵, 청소, 마스크, 커피류, 판촉물인쇄, 카페, 소독방역	수성구
12	대구시희망드리보호작업장	053-764-1070	종이컵, 판촉물인쇄	수성구
13	반석보호작업장	053-381-1126	인쇄물, 장갑류, 폴리프로필렌포대	북구
14	일심보호작업장	053-961-3928	초, 세제류	동구
15	한국장애인문화협회 장애인기업 기전사업본부	053-341-9083	배전반, 제어장치	달성군
16	해인장애인보호작업장	053-323-3432	블라인드, 생활가전세척서비스	북구
17	대구전환서비스센터	053-965-4172	쇼핑백, 인쇄물, 판촉물인쇄	남구

13.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제도 안내



연번	시 설 명	연 락 처	주요 생 산 품	소재지
18	행복누리장애인보호작업장	053-359-3523	델리네이터, 소독방역, 세제류	달서구
19	더불어남구보호작업장	053-651-5515	추출가공식품, 판촉물인쇄	남구
20	더불어보호작업장	053-983-8051	유지류	동구
21	세중보호작업장	054-383-0054	사무용의자(플라스틱), 소독방역, 가구류	군위군
22	한우리보호작업장	053-384-1408	소독방역	북구
23	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일자리사업소	053-954-0170	청소, 소독방역	중구
24	동행보호작업장	053-961-8426	판촉물인쇄, 현수막	동구
25	(사)한국척수장애인협회 디지털사업단	053-965-7277	인쇄물	동구
26	버팀목중증장애인보호작업장	053-263-2419	사무용지류	달서구
27	청인보호작업장	053-624-8520	소독방역, 쇼핑백	남구
28	여성장애인보호작업장	053-637-6086	소독방역, 판촉물인쇄	달서구
29	섬들	053-526-0230	접착식메모지	달서구
30	마중물일터	053-427-7970	제과제빵	중구
31	앞산베네스트	053-246-7597	제과제빵(제과점)	남구
32	행복울타리	053-638-7088	제과제빵	달성군
33	대구다운보호작업장	053-562-5008	유지류	달서구
34	더봄	053-614-9870	생활가전세척서비스, 소독방역, 청소	달성군
35	(사)한국장애인기업협회 자활센터	053-629-2300	청소	달서구

▶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 상담

시 설 명	연 락 처	주요 생 산 품	소재지
대구광역시장애인생산물판매시설	053-984-1116 www.대구판매시설.kr	대구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생산물 및 전국의 모든 중증장애인생산물	동구

8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9 장애인
활동지원금

10 세 제
혜택

11 지 역 사 회 복 지 사 업
(재활시설) 및 기타

12 장애인
고용촉진

13 장애인
고용촉진
및 장애인
고용촉진
및 장애인
고용촉진

<구·군 및 유관기관 연락처>

◆ 구·군(장애인복지부서)

구·군	부서명	전화번호	구·군	부서명	전화번호
중 구	생활보장과	053-661-2662	북 구	희망복지과	053-665-2703
동 구	복지정책과	053-662-2541	수성구	복지정책과	053-666-2567
서 구	사회복지과	053-663-2622	달서구	어르신장애인과	053-667-2563
남 구	행복정책과	053-664-3207	달성군	장애인복지과	053-668-2561
			군위군	주민복지실	054-380-6165

◆ 유관기관

기관명	사업명	전화번호	비고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콜센터	국번없이 129	
여성가족부	여성긴급전화	국번없이 1366	
한국조폐공사	장애인통합복지카드	1577-4321	카드발급
우정사업본부(충청지방우정청)	"	042-930-2412	카드배송
신한카드	"	1544-7000	기능부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경감, 보장구	1577-1000	
국민연금공단	장애인 활동지원	국번없이 129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나드리콜)	1577-6776	장애인 콜택시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구조제도	국번없이 132	
중앙보조기기센터	보조기구 종류, 구입처 등	1670-5529	
대구광역시보조기기센터	보조기기 문의 상담	053-650-8340~3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 직업훈련 등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지역본부	장애인고용, 근로지원인	053-288-1500	
대구광역시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장애인생산품 판매·전시	053-984-1116	
KT	시내·외 전화, 이동전화	국번없이 100	
SKT	"	080-011-6000	
LGU+	"	080-019-7000	
KBS콜센터	TV시청료 감면	1588-1801	
대한항공	항공요금	1588-2001	
아시아나항공	항공요금	1588-8000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통행료 감면	1588-2504	
한국전력	전기요금 할인	국번없이 123	
대성에너지	도시가스 요금할인	053-606-1000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수수료 할인	1577-0990	
국세청	세무상담	국번없이 126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장애인정보통신보조기구	1588-2670	
	통신중계서비스 손말이음센터	국번없이 107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장애인주택 특별공급	1600-1004	

「2026 장애인복지서비스 한 권으로 알아보기」는?

장애인들과 가족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내용을 요약하여 담고 있습니다.

발간되는 책자는 구·군 장애인복지 부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복지시설에 비치되며,
대구광역시 홈페이지(www.daegu.go.kr/welf)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6 장애인 복지서비스 한 권으로 알아보기

발행처 대구광역시 장애인복지과

발행일 2026년 5월

연락처 053) 803-3281

발간등록번호 53-6270000-000540-01

©대구광역시

본 저작물의 저작권 및 판권은 대구광역시에 있습니다.